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체코 공화국(영문: The Czech Republic, 체코어: esk Republika)
면적	78,870 km ² (자료원 : 체코 통계청, 2018 기준)
수도	프라하(Prague)
인구	10,625,449 명 (자료원 : 체코 통계청, 2018 기준)
민족(인종)	체코인(95.5%), 우크라이나(1.0%), 슬로바키아(0.9%), 베트남인(0.5%), 러시아(0.3%), 기타(0.2%)
언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일어
종교	카톨릭(10.3%), 개신교(0.9%), 기타(9.4%), 무교(34.2%), 무응답(45.2%)
기후	대륙성 기후. 겨울이 비교적 온화, 여름이 무덥지 않음(연평균 9~10도)
국가원수	대통령: 밀로쉬 제만(Milos Zeman) ('13년 3월 취임, '18년 3월 재임) 총리: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 ('17년 12월 취임 후 사임, '18년 6월 총리로 재지명)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	---	---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90-03-22 (자료원 : 체코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협정	1990-10-26	항공협정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약	1995-03-03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투자보장협정	1995-03-16	투자보장협정 발효	
과학기술협정	1995-04-03	과학기술협정 발효	
원자력협력협정	2001-03-16	원자력협력 협정 서명	
사회보장협정	2008-11-01	사회보장협정 발효	
경제협력협정	2009-05-15	경제협력협정 발효	양국 정부는 산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운송, 환경보호,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연구소, 기업, 전문기구, 상공회의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
한-EU FTA	2011-07-01	한-EU FTA 발효	
취업관광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협정	2012-06-01	취업관광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협정 발효	
2014-2016 교육문화협력 시행계획서	2014-11-05	2014-2016 교육문화협력 시행계획서 발효	양국간 교육 관련 정보 교류, 고등교육기관 협력, 상대국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공 등 교육분야 협력 및 양국간 음악, 공연, 미술, 도서관, 박물관,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2,547 명 (자료원 : 체코 내무부(영주권 및 비자소유자 기준, 2018년 9월말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2018년 7월 16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공공행정포럼이 개최돼, 한-체코 양국 정부부처가 양국의 정책 사례(전자정부, 주민 등록, 사이버 수사, 국가통계 등)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심보균 차관), 인사혁신처, 경찰청, 조달청, 대구시 등이 참여하고 체코는 내무부, 지역개발부, 경찰청, 프라하시에서 참여했다.

○ 2018년 11월 27일~28일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중간 경유차 프라하를 방문해 28일 체코 바비쉬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을 논의했으며, 체코 동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과의 주요 인사교류 현황

- 1992.4. 체코 Vaclav Havel 연방 대통령 내외 국민 방한
- 1994.10. 체코 Vaclav Klaus 총리내외 방한
- 1995.3. 한국 김영삼 대통령 내외 국민 방체
- 2001.3. 체코 Milos Zeman 총리내외 방한
- 2003.7. 한국 고건 국무총리 내외 방체
- 2009.4. 한국 한승수 국무총리 방체
- 2009.5. 체코 Vaclav Klaus 대통령 방한(EU 의장국 자격)
- 2011.10. 체코 Milan Stech 상원의장 방한
- 2012.3. 체코 Karel Schwarzenberg 외교장관 방한
- 2013.5. 한국 박병석 국회부의장 방체
- 2014.7.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체
- 2015.2. 체코 Sobotka 총리 방한
- 2015.12. 한국 박근혜 대통령 방체
- 2016. 8. 한국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방체
- 2016. 11. 체코 Lubomir Zaoralek 외교장관 방한
- 2017. 3. 한국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방체
- 2017. 6. 체코 하마ček 하원의장 방한
- 2017. 9. 제72차 유엔총회(뉴욕) 계기 한-체코 정상회담
- 2017. 10. 한국 국회 대표단(이철희, 황희, 추혜선 김성원 의원) 방체
- 2017. 10. 체코 슈테흐 상원의장 및 상원의장단 방한(원전협력)
- 2017. 11. 한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체(원전사업 협력)
- 2018. 2. 체코 슈테흐 상원의장 방한
- 2018. 7.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방체(한-체 공공행정협력포럼)
- 2018. 11. 한국 문재인 대통령 방체

경제

○ 한-체코 에너지, 인프라, R&D 분야 등 MOU 18건 체결: 2015년 12월 한-체 정상회담과 한국 체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열려 양국의 에너지, 인프라, R&D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고, 보건 의료, ICT, 문화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18건의 MOU를 체결했다. 또, 한국전력과 체코의 스코다프라하(SP)는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운영 및 유지보수, 원전분야 신기술 교류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체코 원전사업 MOU 체결 및 협력 교류 활발: 체코정부는 현재 두코바니와 테멜린 부지별로 1000MW 이상의 원전 1~2기를 2035년 운영을 목표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신규 원전 재원 조달 모델을 선정하고 내년 초 국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가 추진 중인 원전사업 수주에 노력 중이며 산업부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0월 체코의 원전특

사를 시작으로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원의장이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형 원전의 안정성과 건설역량을 확인했으며, 11월에는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당시 총리 내정자)를 만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경제·산업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하블리체크 체코 산업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체코 전략산업계연합과 원자력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8년 6월에는 울주군 신장열 군수가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 원전 도시인 트르제비치시를 방문했으며, 체코 트르제비치시와 울주군은 우호협력교류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교류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문화

- 2013년 4월 서울에 주한 체코문화원이 개설됐으며, 2013년 9월에는 체코 카렐대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세종학당이 설립됐다. 2013년 12월에는 팔라츠키 대학과 강남대에서 한국어 강의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K-Pop 경연대회 및 문화행사 등이 개최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체코에서 한국 영화는 1992년 이래로 체코에서 꾸준히 해마다 상영되고 있으며, 매년 프라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영화제 FILMASIA에서는 최신 한국 인기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다. 2014년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인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서, 총 2편의 영화가 인기 상영됐다.

- 2015년 10월에는 충남대와 프라하 건축디자인 대학교(VUP)가 대학 간 일반협정과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6년 6월에는 주한 체코대사관 야나 할로우코바 부대사와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 정재민 회장이 공동으로 추진한 '2016 한국-체코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코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체코의 대표적인 국제 문화행사에 참여해 한복패션쇼, 부채춤, 아리랑, 강강술래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2017년 1월에는 제주의 신화를 재해석한 인형극에 체코 프라하의 체코국립인형극장에서 상연됐다.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체코국립인형극장에서 상연되는 공연으로 지난 2015년 한국-체코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 정도의 시점에서 마련된 것이다.

-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체코 내에서 높아졌다. 또한, 김치배틀행사, 프라하 치맥 페스티벌, 한-체코 차세대 음악회, 태권도 대회, 비빔밥 페스티벌, 한지공예 전시회 등 다양한 한국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체코 문화와 교류하는 자리들이 있었다.

 <p>공공누리</p>	 <p>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p>	<p>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p>
---	--	---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2.72	5.31	2.45	4.35	2.96
명목GDP (십억\$)	207.82	186.83	195.09	215.83	244.54
1인당 GDP (PPP, \$)	30,527.43	32,412.29	33,520.03	35,537	37,423.31
정부부채 (% of GDP)	42.17	39.96	36.81	34.67	33.17
물가상승률 (%)	0.34	0.34	0.68	2.43	2.33
실업률 (%)	6.1	5.04	3.95	2.89	2.5
수출액 (백만\$)	175,016.83	157,880.87	162,715.86	182,235.82	202,626.11
수입액 (백만\$)	154,233.23	141,366.64	143,040.96	163,374.14	184,893.39
무역수지 (백만\$)	20,783.6	16,514.23	19,674.9	18,861.68	17,732.72
외환 보유고 (백만\$)	54,101.91	64,163.53	85,380.34	147,598.06	142,164.66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20.76	24.6	24.44	23.38	21.73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2017년 유럽지역은 지난 10년만에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을 기록해 체코 경제도 대내외의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받으며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인 2.4%를 웃도는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호조에 따른 임금상승 가속화,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소비 신뢰로 가계소비 및 정부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 임금증가와 저금리로 인한 저축률 감소, 향후 발전에 대한 높은 소비자 신뢰도가 반영돼 가계소비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으며, 총 고정자본형성도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

2018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인 EU지역의 유리한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 둔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남유럽 국가의 높은 정부부채 등이 경기 하방 압력요인으로 작용해 경제성장 속도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 실질 경제성장률도 2018년 1분기에는 3.4%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2.7%로 둔화됐다. 그러나 총 고정자본투자는 전년대비 8.8%의 역동적인 성장으로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주택투자를 포함한 건설투자도 두 자릿 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EU기금의 공동 자금으로

조달된 프로젝트로 인해 정부부문의 투자 및 민간부문의 투자가 각각 23.2%, 6.6%(실질증가율)로 증가했다.

완전고용을 넘어선 낮은 실업률이 지속돼 2018년 2분기 체코 실업률은 2.2%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높은 임금상승(2018년 2분기 임금상승률 8.6%)이 반영돼 가계소비는 3.8% 증가했다. 그러나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율은 둔화됐다. 수입증가와 수출시장 성장 둔화로 대외 무역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년 2분기에 -0.2pp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 전망

가계소비와 기업 및 일반 정부부문의 투자 활동을 중심으로 한 내수가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무역 수지는 GDP 성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재무부는 2018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다소 하향 조정해, 2018년 경제성장률을 3.0%, 2019년에 2.9%로 전망했다.(IMF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8년 3.06%, 2019년 3.05%로 전망)

2018년 가계소비는 실질 가치분소득 증가와 저축률의 소폭 감소로 뒷받침 될 것이나 2019년에는 저축률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인상률은 2018년에 9.5%, 2019년에는 8.4%가 예상돼 2019년에는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2018년 대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 대출의 역동성 및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반영해 가계소비 증가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3.6%로 전망된다.

정부부문의 소비성장의 주 요인인 고용증가로 인해 정부지출은 2018년에 2.5%, 2019년에는 2.1% 증가가 예상된다. 2014-2020 EU기금의 지속적인 집행으로 정부투자가 증가하고, 민간 투자도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저금리, 그리고 지속되는 인력부족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투자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점차 증가하는 EU 지역의 불확실성 증가 등의 외부요인은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는 긴축 통화정책,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EU펀드 집행감소(2014년과 2015년에 할당된 EU펀드는 2018년까지만 활용가능) 등의 요인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2018년 7.8%의 예상치에 비해 2019년에는 3.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5,775,424,319
2	슬로바키아	14,640,788,752
3	폴란드	10,415,027,328
4	영국	8,871,428,425
5	프랑스	8,829,539,861
6	오스트리아	7,549,930,407
7	이탈리아	6,319,070,037
8	러시아	5,452,117,623
9	헝가리	4,871,279,126
10	네덜란드	4,766,094,08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0,567,277,256
2	슬로바키아	14,145,818,724
3	폴란드	9,228,940,903
4	영국	8,371,819,837
5	프랑스	8,044,959,236
6	오스트리아	6,395,531,617
7	이탈리아	5,872,104,531
8	헝가리	4,680,773,065
9	네덜란드	4,348,311,906

10	스페인	4,140,021,194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2,492,419,079
2	슬로바키아	13,554,031,746
3	폴란드	9,349,783,726
4	영국	8,519,963,103
5	프랑스	8,392,963,815
6	이탈리아	6,869,266,817
7	오스트리아	6,863,982,408
8	헝가리	4,666,629,096
9	네덜란드	4,645,528,261
10	스페인	4,569,633,64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9,413,682,174
2	슬로바키아	13,920,840,988
3	폴란드	10,912,335,248
4	프랑스	9,284,496,883
5	영국	9,026,391,182
6	오스트리아	8,013,316,336
7	이탈리아	7,406,702,153
8	네덜란드	6,339,140,214
9	헝가리	5,438,716,941
10	스페인	5,215,928,381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0,154,997,483
2	중화인민공화국	17,426,277,263
3	폴란드	11,865,462,898
4	슬로바키아	8,121,678,787
5	이탈리아	6,330,832,840
6	러시아	6,248,073,732
7	네덜란드	5,178,693,378
8	프랑스	4,924,285,899
9	오스트리아	4,793,556,553
10	미국	3,724,818,924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6,564,620,718
2	중화인민공화국	18,998,267,416
3	폴란드	11,159,827,350
4	슬로바키아	7,227,569,769
5	이탈리아	5,720,704,771
6	프랑스	4,287,283,005
7	러시아	4,194,560,296
8	네덜란드	4,192,756,179
9	오스트리아	4,189,914,841
10	대한민국	3,360,250,178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7,779,178,409
2	중화인민공화국	17,648,830,336
3	폴란드	11,776,829,120
4	슬로바키아	7,252,604,569

5	이탈리아	6,164,700,991
6	프랑스	4,523,591,937
7	오스트리아	4,130,249,046
8	네덜란드	4,066,962,057
9	영국	3,809,269,324
10	대한민국	3,506,128,687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2,065,680,401
2	중화인민공화국	20,498,182,473
3	폴란드	12,559,436,221
4	슬로바키아	7,868,064,259
5	이탈리아	6,882,636,402
6	오스트리아	5,134,637,982
7	프랑스	5,117,421,552
8	러시아	4,953,432,149
9	네덜란드	4,424,945,046
10	영국	4,258,895,44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7,962,337,849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4,653,820,709
3	870829	기타	3,975,327,374

4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 또는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770,063,579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2,942,751,344
6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882,075,68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848,371,845
8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 퍼즐	2,645,253,665
9	940190	부분품	2,142,898,989
10	870899	기타	2,069,043,287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7,538,961,074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4,097,100,394
3	870829	기타	3,743,689,287
4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49,386,508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762,470,731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2,709,696,385
7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473,369,551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2,400,790,382
9	940190	부분품	1,911,870,048
10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1,875,374,878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8,416,144,191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4,630,333,600
3	870829	기타	4,005,281,636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3,098,056,695
5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51,418,977
6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546,768,272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539,070,288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2,293,228,464
9	940190	부분품	2,060,529,796
10	870899	기타	1,886,477,41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2,500cc 이하인 것	8,590,725,288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5,038,381,787
3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670,052,862
4	870829	기타	4,396,684,720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784,675,794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3,617,548,967

7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3,320,270,890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2,804,227,852
9	940190	부분품	2,605,410,196
10	950300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378,733,786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5,656,796,584
2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051,380,267
3	300490	기타	2,938,243,852
4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690,216,288
5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647,781,481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럭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회로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95,746,395
7	271121	천연가스	2,433,806,232
8	870829	기타	2,085,658,911
9	847170	기억장치	1,465,807,770
10	392690	기타	1,451,121,45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488,807,837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3,059,617,162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968,613,577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682,971,454

5	300490	기타	2,559,974,642
6	271121	천연가스	2,481,691,190
7	870829	기타	2,034,699,161
8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937,551,400
9	847170	기억장치	1,603,588,903
10	392690	기타	1,376,204,198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797,419,484
2	300490	기타	2,693,366,184
3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2,447,766,441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203,398,136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182,252,601
6	870829	기타	2,137,208,451
7	271121	천연가스	1,705,940,389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86,420,844
9	940190	부분품	1,606,633,512
10	847170	기억장치	1,586,003,64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247,432,67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178,126,289
3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3,119,073,607
4	300490	기타	2,990,282,294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623,758,292
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535,617,922
7	870829	기타	2,393,976,918
8	271121	천연가스	1,996,579,962
9	940190	부분품	1,935,430,099
10	847170	기억장치	1,844,198,666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1,812	558	1,254
2015	2,040	577	1,463
2016	2,176	619	1,557
2017	2,212	716	1,496
2018	2,065	708	1,35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854	125	728
2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123	6	116
3	7111	원동기	150	6	143
4	8132	보조기억장치	131	0	130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54	9	45
6	2140	합성수지	71	0	70
7	7121	운반하역기계	4	2	1
8	7411	승용차	72	1	71
9	7531	프레스금형	31	0	30
10	3203	타이어	28	20	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20	자동차부품	710	125	585
2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111	3	108
3	7111	원동기	102	3	99
4	8132	보조기억장치	96	0	96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93	8	85
6	2140	합성수지	75	0	75
7	7121	운반하역기계	64	1	63
8	7411	승용차	64	5	59
9	7531	프레스금형	34	1	33
10	3203	타이어	33	16	1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854	125	728
2	8148	전자현미경	2	101	-100
3	7112	펌프	24	44	-21
4	8155	분석시험기	2	5	-4
5	7512	밸브	7	17	-10
6	3203	타이어	28	20	7
7	8269	기타조명기기	23	14	8
8	6172	주철	20	12	7
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7	1	5
10	7442	철도차량부품	0	7	-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710	125	585
2	8148	전자현미경	3	77	-74
3	7112	펌프	30	60	-30
4	8155	분석시험기	1	36	-35

5	7512	밸브	8	29	-21
6	3203	타이어	33	16	17
7	8269	기타조명기기	22	14	8
8	6172	주철	19	13	6
9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9	12	-3
10	7442	철도차량부품	0	12	-1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7.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발효 전 망)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2018.12월 양측 의회 비준 완 료 2019.2.1 발효 전망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발효 전망)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 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 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 잠비크(2018.2.4))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 operation Agreement) 협정 을 대체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3.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4월 부로 보류 *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Trade Agreement	콜롬비아	2012-07-26	2013-01-01	잠정 발효

Stepping ston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3-08-01	잠정 발효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8.1), 페루(2013.3.1), 에콰도르(2017.1.1)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8.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1) 과테말라(2013.12.1)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 보류. 직전협상 : 2016.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월, EU- ASEAN 개별회 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 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 보류, 직전협상 : 2012년 4월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 2014.4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 2018.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 2017.2월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 2016.12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 보류. 직전협상 : 2013년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협상 중, 직전협상 : 2018.7월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4.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 2000.10.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18.7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 협상: 2018.7월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중. 협상 개시일 2013.11월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 2017.2월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 부분 현대화 추진 중(협상 개 시 : 2017.11.16.)	기존 협정 발효일 : 2005.3.1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 2013.10.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 1998.3.1

〈자료원 : EU 집행위〉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73류 일부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03-26
2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규제중)	2016-02-18
3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4-08-14
4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9-08-12
5	2804.69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6-04-20
6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2001-06-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15년 9월, 유럽의회는 물개제품에 대한 교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 잡이를 금지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했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 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 잡이만 허용해왔었다. 2014년 6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2월 물개 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삭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

(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인증, REACH, CPNP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

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물질정보(화학물질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http://iuclid.eu>

- 평가: 서류검증 및 질적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ECHA는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승인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규정적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아직까지도 국내업체들 중에 CPNP에 대해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책임자가 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제품이 EU 현지 브랜드 또는 역내 유통사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통사가 책임자가 된다. 참고로 지정된 책임자는 제품 시장출시 전, EU 집행위 사전신고를 비롯해 불량제품 발생 시 시장철수 및 리콜 등 규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있다.

CPNP 인증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OTRA 뉴스를 참고할 수 있겠다.

- CPNP 정보 링크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9902&pageViewType=&column=title&search=cpnp&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l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5)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신 장난감 안전지침의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2)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15,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은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S(BPS)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BP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BPS 사용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속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EU FTA에 의거해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EU 관세율 검색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 HS Code 6자리~8자리를 입력, 원산지 또는 출발국가를 지정, Retrieve Measures 버튼을 클릭한다.
-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의 관세를 확인한다. 참고로 ERGA OMNES 의미는 '대세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나라라는 의미

이다.

종종 한국의 HS Code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EU 내에서 사용하는 관세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6자리까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code이기 때문에 7자리 부터는 해당국 관세청에 정확한 HS Code를 문의 후 확인해야 한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체코의 통관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다.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가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EU의 관세 분류 번호는 EU 집행위원회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 <http://www.eu-gateway.eu/home>

1) 약식 통관

탁송물의 원활한 배송과 행정절차 비용 감소를 위해 관련 통관당국에 약식 통관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약식 통관절차의 가장 신속한 형태는 지역 통관 절차이며, 이 방식은 수입을 할 때 상품이 수입업자에게 특별한 통관절차 없이 직접 배송될 수 있게 하고, 수입업자가 지정된 파일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약식 통관의 경우, 단일 관리 문서(SAD)의 통관당국 제출만이 요구된다. 세관당국의 감사를 허락한다는 조건 하에서 통관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약식통관 허가를 낼 수 있다.

2) 정식 통관

체코의 통관절차는 체코 우편당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EU지역 외 국가에서 배송된 물품이 우편당국으로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통관 담당 부서로 보내지게 된다. 세관조사는 통관 서류 검사, 물품 확인, 수입자 조회 등이며, 물품 확인은 X-ray 검사와 필요한 경우 탁송물 개봉 및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탁송물이 세관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체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다.

3) 우편통관

우편통관의 경우, 22유로 아래 비상업적 목적의 탁송물만이 부가가치세와 관세 납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EU외 국가에서 탁송물을 받을 경우 22유로 이상 150유로 이하의 물품에는 21%의 부가가치, 150유로 초과 물품에는 21%의 부가가치세에 추가 관세가 발생한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5% 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는 탁송물 수신인에게 있다. 상품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생긴 경우, 수신인은 탁송물이 배송되기 전 해당 금액을 체코 우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통관 소요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보관료 및 통관 완료 후 발송비가 추가 될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체코 세관은 유럽 내에서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KOTRA 프라하 무역관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 원산지 증명서를 원본으로 요구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라는 바이어 및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체코 수출 시 필요한 서류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담당 세관원에 따라 같은 물품이라도 통관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보수적으로 준비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해야 한다. 더불어 단순 브로슈어, 카달로그, 책자 등도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발송 전 관련 서류를 꼼꼼

히 준비해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UI Logistic Czech s.r.o.

주소	Beskydska 1488, 738 01 Frydek-Mistek
전화번호	+420 558 436 623
이메일	twkim@uilogistic.com
비고	홈페이지 미 보유

○ ESA Logistic

주소	Oldrichova 158 272 03 Kladno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314 006 444
이메일	info@esa-logistics.eu
홈페이지	http://www.esa-logistics.eu/contact/czech-republic/

○ Care &Go s r o

주소	Velenka 89, 289 12 Sadska,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325 598 150
이메일	info@careandgo.com
홈페이지	http://www.careandgo.com

○ CSKD INTRANS a s

주소	Jana Zelivskeho 2, 130 00 Praha 3, Czech Republic
전화번호	+420 220 193 200
홈페이지	http://www.railcargoooperator.cz

<자료원 : KOTRA 프라하 무역관>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투자: 체코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의 별도 승인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액의 규모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코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 체코 기업과 동일하게 회사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규: 기본적으로 회사법(Act 90/2012 Coll.)에 의거해 법인설립이 규정되며, 민법(Act No. 89/2012)에는 기업, 파트너십 및 협동조합의 구성 및 구조에 관한 기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투자 인센티브 관련 조건 및 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법규(Act No. 72/2000 Coll.)에 서 규정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체코는 자유화 이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온 폴란드나 헝가리와는 달리, 자유화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에 국내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별다른 특혜 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주변국의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아 1998년 4월에야 처음으로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했다. 이 후 EU가입과 함께 EU의 외국인 직접 투자 지침에 의거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5년 하반기부터 개편된 체코 투자 인센티브법(Act No. 72/2000)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코 내 인력부족이 대두되고 기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투자 유치는 더 이상 체코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체코 투자청은 R&D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유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 투자청은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인센티브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체코 투자청에서 밝힌 개정 초안에 따르면, 제조업 투자의 경우 기존의 신규 창출 일자리 수 충족 조건에서 직원의 80% 이상에게 투자지역의 평균 월급 이상 지급, 직원의 10%는 대학졸업자 채용, 2%는 R&D 분야 직원 채용 등으로 조건이 변경될 예정이며, 고용보조 및 직원교육비 현금 지원은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투자청은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은 입법과정을 거친 후 2019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코 내 제조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향후 인센티브 개정안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1)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적격비용

○ 체코 내 사무실이 등록된 체코/외국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 단, 프라하 지역의 투자인 경우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대상이 되나, 규모별로 정부보조금 상한선(인센티브 수혜한도)이 상이하게 적용됨.

- 적격비용에 대해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35%, 소기업 최대 45%까지 지원 (데이터 센터의 경우 6.25%까지만 지원)

· 기업 분류 기준: 대기업은 직원 250명 초과, 매출(Turnover) 5천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이 4천3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은 직원 50명-250명, 매출(Turnover) 5천만 유로 미만 또는 자산이 4천3백만 유로 미만인 기업/ 소기업은 직원 50명 미만, 매출 또는 자산이 1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적격비용은 토지, 건물, 기계장비, 특정무형자산 등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하며 신규기계구입에 최소 50%가 투자되어야 함.

- 적격비용 산출 시 테크니컬 센터와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제조업 투자와 동일하게 신규기계 가격이 취득자산가치의 50%를 넘

는 경우 적격비용은 장기자산 전체가 된다(50% 미만인 경우, 신규 기계 취득비용의 2배)

- 단, 테크니컬 센터와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장기자산 또는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적격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투자 인센티브 지원 요건

기본적으로 최소 투자금과 최소 신규고용창출 인원을 동시에 충족할 때 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만 충족 시 수혜가능) 투자유형은 일반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는 최소 투자금액이 5억 코루나에 달하고(최소 50%가 신규기계에 투자) 최소 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하며, 일반투자 인센티브 혜택에 설비 투자 보조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략적 투자는 제조업과 테크니컬 센터만 해당)

○ 제조업

- 최소 투자금: 일반투자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5000만~1억 체코 코루나,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5억 체코 코루나 (단, 신규기계에 최소 50% 투자)

-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일반투자자의 경우 20명,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500명

· 지역에 따른 투자금액은 체코 투자청 인센티브 자료에서 지역별 최소 투자금액 지도 참고:

<https://www.czechinvest.org/getattachment/Unsere-Dienstleistungen/Investitionsanreize/Incentives-Matrix-for-2H-2018.pdf>

○ 테크놀로지 센터(R&D 센터)

- 최소 투자금: 일반투자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 체코 코루나,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2억 체코 코루나 (단, 신규기계에 최소 50% 투자)

-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일반투자자의 경우 20명,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100명

○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 최소 신규 고용창출 인원: 소프트웨어·IT개발/데이터센터 20명, 공동서비스 센터/하이테크 수리센터 70명, 고객센터 센터 500명

3) 투자 인센티브 내용

투자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유형에 따라 법인세 면제, 고용 보조금, 직원 교육비, 재산세 면제(산업특구단지), 설비투자 보조금(전략적 투자만 해당), 입지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정보보조금의 하나로, 정부보조금 상한선에 따라 최대 인센티브 지원금이 제한된다. 2014년 7월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EU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체코 정부지원금의 상한선이 하향 조정됐다. 체코는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의 평균소득이 EU평균소득의 60~75% 미만으로 분류돼 기존 적격비용(토지, 건물, 기계장비, 특정무형자산 등 자산에 대한 투자, 신규기계에 50% 투자조건)의 40%에서 축소된 25%까지만 투자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추가 지원이 없으나, 중기업의 경우 10%가 추가되고 소기업의 경우 20%가 추가된다. 정부보조금에는 조세 감면 금액, 고용창출 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 재산세 면제, 입지우대 지원금이 포함되며, 직원 교육비는 정부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인세 감면

- 신규투자자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법인세 19%)가 면제

- 기존의 체코 회사를 확장 투자인 경우 또한 최대 10년간 부분적 면제 가능

- 법인세 면제의 최대액수는 지역별 정부보조금 지원 상한선에서 고용창출 보조금, 설비투자 보조금, 재산세 면제, 입지우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대 허용한도임. 또한, 최대 10년까지이기 때문에 10년까지 받은 법인세 감면 금액이 정부보조금 상한선에 도달하지 못해도 11년째부터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고용창출 보조금

- 산업특구 지역과 실업률이 체코 전국 평균 실업률 보다 25% 이상인 지역만 고용창출 보조금 지급

- 신규고용 1인당 지역에 따라 10만~30만 체코 코로나 지원

· 지역에 따른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은 체코 투자청 인센티브 자료에서 지역별 고용창출 보조 및 직원교육비 지원 지도 참고:

<https://www.czechinvest.org/getattachment/Unsere-Dienstleistungen/Investitionsanreize/Incentives-Matrix-for-2H-2018.pdf>

○ 직원 교육비

- 실업률이 체코 전국 평균 실업률 보다 25% 이상인 지역만 직원 교육비가 지급되며, 직원 교육비 지원은 정부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역에 따라 총 발생된 직원 교육비용의 25%~50% 현금 지원

· 지역에 따른 직원 교육비 지원은 체코 투자청 인센티브 자료에서 지역별 고용창출 보조 및 직원교육비 지원 지도 참고:

<https://www.czechinvest.org/getattachment/Unsere-Dienstleistungen/Investitionsanreize/Incentives-Matrix-for-2H-2018.pdf>

○ 설비 투자 보조금(Cash Grant)

- 제조업과 테크니컬 센터(R&D센터)의 전략적 투자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적격비용의 최대 10% 지원(제조업은 최대 15억 코루나, 테크니컬 센터는 최대 5억 코루나까지 지원)

○ 입지 우대

-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 부지의 경우, 구매 시 우대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부지의 구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인센티브로 간주됨.

- 산업특구단지(SIZ)로 지정된 범위 내 부지 구매에 한해 최대 5년간 재산세(Property Tax)를 감면 받을 수 있음.

4) 투자 인센티브 신청 서류

투자 인센티브 신청은 신청인의 의해 체코 투자청(CzechInvest)에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서는 체코어로 작성돼 서면 및 CD-ROM 형태의 전자문자로 제출해야 한다. 설립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또는 타 설립자의 동의서(other founder's agreement) 및 회사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은 영어로 제출 가능하다.

○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서류: 서명 공증이 필요하며, 아래의 신청서 및 법적 서약서 양식은 체코 투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 및 감가상각산출서(Discounting for applicant)

- 법적 서약서

·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를 체코 투자청에 제출하기 이전에 프로젝트 시작하지 않았다는 서약서

· 신청자가 지불불능/파산의 위험이 없고 지불불능/파산 결정이 없다는 요지의 서약서

· CD-ROM 형태로 제출되는 문서가 서면형태의 서류와 동일하다는 요지의 서약서

·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며, 법적이거나 공동체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원조도 받지 않았으며, 만약 원조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조를 모두 변제했다는 요지의 서약서

· 동일하거나 비슷한 활동을 유럽경제지역(EEA)내에서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

- 기업체 규모를 증명하는 법적 증명서

- 조사목적에 위한 세법에 따라 관련 조세당국 직원이나 재무부 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해방시켜주는 서류(확장 프로젝트처럼 신청인과 수혜인이 동일한 경우)

○ 원본 또는 공증사본 서류

- 설립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또는 타 설립자의 동의서 또는 설립헌정(founding charter)

- 회사정관(Articles of associations); 있는 경우에만

-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er)로부터 발췌문(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첨부 서류

- 신청인이 현재까지 세금 체납기록이 없고, 사회보장금, 고용정책출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어떠한 체납금이나 벌금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분)
- 투자 프로젝트 설명서
- 신청인(회사)의 간략한 연혁, 활동 계획, 자금조달 방법, 경쟁사 정보, 투자 프로젝트 시행 이유, 기술적인 생산 프로세스, 완제품 사양, 투자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
- 제조업 분야의 생산 확대 프로젝트인 경우 확장 형태의 자세한 설명 및 사양: a)기존 시설의 생산능력 확대, b)기존 시설의 생산품 다각화(기존에 생산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 생산), c)기존 시설의 전반적인 생산 프로세스 변화
- 테크놀로지 센터 및 서비스 센터의 경우 프로젝트 결과 및 프로젝트 조직/인사 사양
- 그룹 비즈니스의 조직도(organisation): 신청인(회사)이 그룹회사의 일부인 경우

5) 투자 인센티브 신청 절차

투자 인센티브 신청절차는 신규투자의 경우 약 6개월, 기존회사의 확장투자의 경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체코 투자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고 적격비용에 모든 지출을 포함할 수 있다. 일정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정리한 것이며, 투자지역의 인프라 구축 상태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체코 투자청은 투자 인센티브 담당기관으로 초기 투자 상담부터 인센티브 신청 후 사후관리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 인센티브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투자청과 상담해 보기를 권장한다.

- 체코 투자청에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체코 투자청에서 1개월 이내 서류 검토 후 산업통상부에 제출
- 산업통상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2개월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 형태 및 규모를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제안서(Offer of Investment Incentives)' 발급
- 투자자는 산업무역부의 제안서에 대한 동의 여부를 3개월 이내에 회신
- 산업통상부에서 투자자의 동의를 체코 투자청을 통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투자 인센티브 지원 결정서(Decision to Grant Investment Incentives)' 발급

6) 투자 인센티브 활용 원칙 및 수혜조건 위반 규정

수혜자는 요구되는 자산 및 창출된 일자리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체 기간을 통해 (최소한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수혜자는 같은 투자 프로젝트 건으로 정부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해 추가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것이며, 적발됐을 경우 초과분 환수 및 정부예산규정에 따른 페널티(최소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보유 기간 동안 지정된 이자)를 내야 한다. 수혜자가 인센티브 수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수혜자는 제공받은 지원금 환수 및 페널티(최소로 보유 기간 동안 인센티브 지급금의 지정된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군수산업 및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미디어의 경우 공중파 방송은 방송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은 등록 절차만 하도록 돼 있다.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체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에는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설 은행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5억 크라운이며, 체코 내 법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도 중앙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체코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체코 기업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하고 정부의 별도 승인 및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 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산업특구단지(Special Industrial Zone)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 혜택이 있다.

투자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 산업특구단지(SIZ)는 현재 Ostrava-Mosnov, Most-Joseph, Holesov 3곳으로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적용 시 최소 투자금액이 5000만 체코 코루나로 다른 지역(1억 코루나)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산업특구단지 투자 시 고용창출 보조금은 1인당 30만 코루나로 10~20만 코루나인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직원 교육비는 지원되지 않는 단점도 있어 투자지역 결정 시 회사의 성격이나 사업내용에 맞게 유리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체코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산업 공단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됐다. 그러나, 체코 내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은 우리나라 개념의 대규모 공단이라기 보다는 지방정부 및 민간 개발 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입주 대상 특정 산업 분야를 결정하지 않은 일반 산업단지가 대부분이다. 현재 체코에는 5개의 전략적 산업단지외와 1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600여 개 이상의 제조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점유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산업단지는 일반 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 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이 정리돼 있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단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주 대상 단지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코 투자청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임대 및 매물 부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투자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투자지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중개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

◦ Strategic Industrial Zone Kolin-Ovcary

규모	입지가능 규모 70ha (총 규모 370ha)
위치	Prumyslova zona Kolin-Ovcary, 280 02
임차료	매매가격: 1㎡ 당 410 체코 코루나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Planning Ing. Martin Tichy (Head of the department) 주소: Karlovo namesti 78, 280 12 Kolin (Mesto Kolin) 전화: +420-777-297-479 홈페이지: www.zonakolin-ovcary.cz/en 이메일: martin.tichy@mukolin.cz
비고	◦ 교통 인프라: 철도로부터 4km, D11 고속도로까지 9km, 프라하 공항에서 74km ◦ 지자체인 Kolin시가 조성주체로 산업지구에 입지한 대표기업으로 TPCA(Toyota Peugeot Citroen Automobile Czech, s.r.o.)가 있음.

◦ Strategic Industrial Zone Triangle

규모	입지가능 규모 80.1ha (총 규모 364ha)
위치	Prumyslova zona Triangle, Prumyslova 1062, 438 01 Bitozeves
임차료	매매가격: 1㎡당 14.5 유로 (VAT 및 기타비용 불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Economic Department, Usti Regio 주소: Velka Hradebni 3118/48, 400 02 Usti nad Labem 전화: +420-475-657-107 팩스: +420-475-200-245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triangle.com/en 이메일: Sixta.j@kr-ustecky.cz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철도로부터 8km, D8 고속도로 50km, R7도로 인접, 프라하공항에서 60km ○ 지자체인 Zatec시가 조성주체로 산업지구에 입지한 대표기업으로 넥센타이어, 키스와이어, Hitachi 등이 있음.

○ Industrial Zone Mosnov

규모	입지가능 규모 59ha (총 규모 200ha)
위치	Prumyslova zona Mosnov, Mosnov 410, 742 51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Department of Strategic Development, City of Ostrava 주소: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전화: +420-599-443-382 팩스: +420-599-442-040 홈페이지: https://www.ostrava.cz/en/podnikatel-investor/investment-opportunities/industrial-zones/strategic-industrial-zone-mosnov 이메일: vpalicka@ostrava.cz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 철도와 직접 연결, D1 고속도로 10km, R48 자동차 전용도로와 인접, 인근에 D47 고속도로 공사 예정, 오스트라바 공항에서 0.5Km ○ 지자체인 Ostrava시가 일부소유하고 있는 산업지구로, 입지한 대표기업으로는 Behr Group, Cromodora Wheels, Plakor, 현대모비스 등이 있음.

<자료원 : 체코 투자청, 체코 통계청>

주요 지역별 여건

○ 프라하(Prague)

- 면적: 496km²
- 인구: 1,301,132명 (2018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1.1% (2018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9,688 체코 코루나 (2018년 2분기 기준)
- 특징: 프라하는 체코 내 최대 FDI 유입 지역으로 주로 글로벌 기업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 비즈니스 센터 등이 진출함. 체코 내 지역 중 최대 대학 졸업자 수를 기록해 유능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나 그 만큼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다수의 기업이 진출해 이직률도 높고 실업률은 전국에서 최저 수준임. 또한, 다국적인 생활환경을 갖추고 거주민의 가처분 소득도 가장 높은 지역임.

○ 모라비아-실레지아(Moravia-Silesia)

- 면적: 5,430km²
- 인구: 1,204,312명 (2018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3.7% (2018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28,585 체코 코루나 (2018년 2분기 기준)
- 특징: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지역으로 고속도로나 철도 항공 등의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고 있음. 특히, 현대자동차 공장과 그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한국 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임.

○ 우스티(Usti)

- 면적: 5,339km²
- 인구: 820,450명 (2018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3.6% (2018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29,255 체코 코루나 (2018년 2분기 기준)
- 특징: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프라하에서 약 80km에 위치하고 독일과도 가까워 프라하와 독일간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함. 최근 넥센타이어와 키스와이어(Kiswire)가 진출했으며 향후 서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임.

○ 중앙 보헤미아(Central Bohemia)

- 면적: 10,928km²
- 인구: 1,360,809명 (2018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2.1% (2018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3,873 체코 코루나 (2018년 2분기 기준)
- 특징: 프라하와 인접한 중심부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조밀한 도로 및 고속도로, 철도 네트워크도 장점임. 숙련 노동력과 다각화된 경제가 장점임.

○ 리베레츠(Liberec)

- 면적: 3,163km²
- 인구: 441,665명 (2018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2.2% (2018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29,711 체코 코루나 (2018년 2분기 기준)
- 특징: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 근접한 전략적인 위치로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산업이 발달함. 또한, 나노소재 및 첨단 기술 혁신 연구를 보유한 리베레츠 기술 대학교가 위치함.

○ 남부 모라비아(South Moravia)

- 면적: 7,188km²
- 인구: 1,184,381명 (2018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2.3% (2018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0,470 체코 코루나 (2018년 2분기 기준)
- 특징: 체코 제2의 도시인 브르노가 위치한 남부 모라비아 지역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와 가까운 입지조건을 갖추었고 전통적으로 산업기반이 조성돼 있음. 국제공항을 포함한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브르노의 경우 다수의 대학이 밀집해 있어 우수인력 공급이 용이함.

○ 플젠(Plzen)

- 면적: 7,649km²
- 인구: 582,534명 (2018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1.5% (2018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30,542 체코 코루나 (2018년 2분기 기준)
- 특징: 전통적으로 기계산업의 기반이 있고 독일과 가까워 매력적인 투자지역 중 하나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높으며 D5 고속도로를 통해 독일과 프라하와의 교통연결이 편리함.

○ 흐라데츠 크랄로베(Hradec Kralove)

- 면적: 4,759km²
- 인구: 550,634명 (2018년 2분기 기준)
- 실업률: 2.1% (2018년 2분기 기준)
- 월평균 임금: 29,985 체코 코루나 (2018년 2분기 기준)
- 특징: 자동차, 전기 장비 및 섬유 제조, 농업 및 서비스 산업 등이 발달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잠재적인 관광자원 보유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3,639.13	5,492	465.1	9,814.77	7,412.16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4,019.16	1,619.53	2,487.44	2,181.81	1,623.47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8	4	7,980	7	4,504
2015	10	5	4,005	11	6,654
2016	13	4	79,916	11	79,587
2017	18	3	100,401	12	98,464
2018	18	9	87,215	22	80,52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	3	7,972	5	4,496
건설업	1	0	4	1	4
도매 및 소매업	1	1	4	1	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8	4	1,599	9	4,248
운수 및 창고업	1	0	2,406	1	2,4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0	1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9	2	52,668	8	52,548
건설업	1	0	5	0	0
도매 및 소매업	1	1	27,129	1	26,925
운수 및 창고업	1	1	104	1	104
숙박 및 음식점업	1	0	10	1	1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9	0	97,317	8	97,223
건설업	1	0	0	0	0
도매 및 소매업	1	0	56	0	0
운수 및 창고업	1	1	51	1	51
정보통신업	1	1	15	1	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10	0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0	588	0	0
N/A	2	1	2,364	2	1,17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7	3	51,306	7	50,157
도매 및 소매업	1	1	28,190	2	28,401
운수 및 창고업	1	0	599	1	599
숙박 및 음식점업	2	1	7	2	7

정보통신업	5	3	1,979	4	1,04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1	2,949	2	57
N/A	1	0	2,185	4	25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성우하이텍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차체 부품
모기업명	성우하이텍

○ 프라코 체코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제
모기업명	(주)프라코

○ 동원금속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도어프레임, 도어 임팩트 빔, 카울 크로스 멤버
모기업명	동원금속(주)

○ 세종 체코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용 배기시스템
모기업명	세종공업(주)

○ 현대자동차 생산법인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동희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연료탱크 모듈, 서스펜션 모듈, 페달 모듈
모기업명	(주)동희산업

○ 현대 다이모스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시트
모기업명	현대다이모스

○ 현대모비스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듈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모비스(주)

○ 한화첨단소재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 언더커버, 범퍼 구성품 (Beam, Energy Absorber), 플라스틱 소재 - EPP (Expanded Polypropylene)
모기업명	한화첨단소재(주)

○ 고려제강 체코법인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금속)
취급분야	타이어내에 들어가는 High carbon wire 생산
모기업명	고려제강(주)

○ 넥센타이어 체코법인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주)

○ 삼성전자 판매법인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휴대폰, 태블릿, 메모리, TV, 백색 가전 등 판매 및 마케팅, 사후 관리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LG전자 체코지점

진출년도	2002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판매 (TV, 세탁기, 냉장고, 모바일폰, 에어컨 등)
모기업명	LG전자(주)

○ 노루비케미칼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화학, 의약)
취급분야	자동차용 플라스틱부품용 도료 제조 및 기술서비스
모기업명	노루비케미칼(주)

○ 디에스시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취급분야	자동차용 시트 프레임
모기업명	(주)디에스시

○ GS칼텍스 체코법인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취급분야	자동차 내,외장재용 복합수지, 가전제품용 복합수지 생산 판매
모기업명	GS칼텍스(주)

○ 두산 스코다파워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기계, 장비)
취급분야	발전소용 증기터빈 및 서비스 용역 (성능개선/유지개보수 등)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	-------



○ 대한항공 체코지점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권 판매,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대한항공

○ 현대제철 체코법인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금속)
취급분야	코일, sheet, SKELP, TWB
모기업명	현대제철(주)

<자료원 :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p>공공누리</p>	 <p>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p> <p>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p>
---	---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개요

회사법상 구분에 따른 형태로 외국기업도 체코 내에서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체코에서 회사의 형태 및 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통합해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1조는 법인의 형태인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a.s.), 협동조합(Cooperatives) 및 유럽연합 내 특수한 형태의 법인인 European Company(SE),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EEIG) 및 European Cooperative Society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체코의 경우 대부분이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그 설립절차 및 요건이 간편할 뿐 아니라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하나 혹은 다수의 자연인(Natural person) 또는 법인(Legal person)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2014년 1월부터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20만 코루나에서 1코루나로 변경됐으며 준비금 또한 제한이 없어졌다. 법인 설립 시 체코 내 이미 동일한 회사명이 있는지 유의해야 하며, 회사 설립 과정은 회사 종류에 따라 약간 상이하나 기본적인 절차는 같다. 참고로 개인이 설립하지 않고 회사가 설립할 경우에는 주주가 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법인형태로는 주식회사로 보통 대기업 설립 시 사용된다. 주식회사 형태는 유로 계좌를 보존시키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 등록 자본으로 200만 코루나(약 80,000유로)가 필요하다. 그 외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독일어권 국가 투자자들에 의해 세금관련 이유로 설립된다.

2)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절차

체코 내 법인 설립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서류 준비이다. 한국에서 필요서류를 적합한 절차를 거쳐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 작성 및 문서 배송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서류는 기본적으로 체코에서 법인 등기를 위해 체코어로 준비되어야 한다. 해당 서류들은 한국에서 준비한 국문·영문 서류를 바탕으로 체코에서 번역, 작성하게 되며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법인 등기 서류로 제출된다.

- 서류준비 및 공증: 체코에서 독립법인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대표자의 무범죄 증명서이며, 자연인의 경우 무범죄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준비한 문서가 체코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각 서류의 원본(국문)과 영문본을 준비해 공증 받은 후,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를 찾아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를 거친 문서는 체코에서 체코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제반서류로 제출하게 된다.

- 법인 주소지 결정: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신청 전에 법인 주소지가 결정되어야 하며, 주소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등기 신청 전에 토지 및 건물의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 2011년 5월 이후 외국인은 특별한 제약 없이 체코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는 체코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반드시 영문 계약서를 별도로 준비해 당사자 간 서명을 받는다.

- 정관 작성 및 샘플 서명(법인 설립): 정관은 반드시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체코 내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한 국문 또는 영문 정관을 바탕으로 체코어 정관을 만들 수 있으나, 국문 또는 영문 정관은 문서상의 효력이 없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1) 법인의 이름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3) 자본금의 규모, (4) 지분 복수 보유 여부, (5) 이사회 명단, 주소 및 회사대표방법 등이 있다. 정관 초안을 완성하고 주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선임된 변호사가 위임된 권한에 따라 정관에 주주를 대신해 서명을 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정관에 서명이 된 순간부터 회사는 법률적으로 '설립 중인 회사'의 지위를 획득하며, 이때부터 제한적 이기는 하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샘플 서명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회사 대표가 변호사가 보는 가운데 서명을 하고 동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으로, 법인 등기 신청 시 샘플 서명을 제출하게 된다.

○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설립자는 법인설립 목적만을 위해 개설된 특별 은행계좌에 출자금을 불입해야 한다. 체코 내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은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다. 법인 등기 전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 즉시 개설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1체코 코루나이나, 실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입금 시에는 은행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00코루나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00만 체코 코루나이며, 일반 은행에서 회사 설립 용도의 특별 계좌를 개설해 자본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특별 계좌는 영업허가서에 발급된 법인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입금된 자본금은 법인등기 후 바로 인출 가능하다

○ 영업허가서(Trade License, Zivnostensky List) 발급: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활동에 영업허가서가 필요하다. 영업허가서는 각 시청 및 지방행정부 소속 영업 허가소(Trade Office; Zivnostensky Urad)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영업허가소는 신청서를 접수 후 5 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통상 1-2일이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1,000체코 코루나에 각 활동영역 별로 500코루나가 추가된다. 영업허가사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의 신청서(온라인 <http://www.rzp.cz/elpod.html>), 정관, 사업장 임대계약서(또는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 영업활동 영역, 공인대표자의 무범죄 증명서(체코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등이며, 사업종목에 따라 공인대표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 등, 공인대표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영업허가서 신청에는 사업종목에 따라 일반 신청, 허가 등으로 분류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활동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증 또는 사업책임자의 고용 계약서와 전문자격증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 상업 등기소 등록(Commercial Register): 법인은 각각의 등기법원(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상업 등기소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회사의 집행기구는, 설립서류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창립 6개월 내에 상업 등기소에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 등기소 의무 표준 신청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등기법원은 부당한 지체 없이 회사를 등록하거나 또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업 등기소에 등록 후에는 상업 등기소 홈페이지(www.justice.cz)에서 등록된 법인을 검색할 수 있다. 상업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등록할 각 정보를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 설립의 타당성, 설립자의 존재 여부(본국의 법인등기증 등), 설립자를 위해 활동할 대표의 권한 등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발행한지 3개월 이내

- 설립 서류(설립자 증서, 회사설립계약서, 정관 등)
- 법인의 법정최소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증거 (일반적으로 관련 은행 입금증서)
- 집행기구 및 감사기구 구성원이 서명한 진술서, 구성원의 세부사항을 상업 등기소에 등록에 대한 각 구성원의 동의서
- 각 대표자 및 감사회 구성원에 대한 무범죄 증명서 (체코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 사업활동과 관련된 영업허가서(Trade License)
- 사업장 임대계약서(공중 및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
- 상기 서류나 신청서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현지 변호사 등)에 대한 위임장

○ 납세번호(DIC) 발급 신청: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번호(DIC,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세 등록마감은 회사설립이 완료 후 15일 이내이며 국세청(Tax Office)에 등록 후 회사는 납세번호(DIC;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No. 235/2004)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Turnover)가 1백만 체코 코루나를 초과하는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등록기간은 부가가치세 납세자 의무가 발생한 날(연간 매출액이 1백만 초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등록기간 없이 수시 등록이 가능하다.

○ 사회보장세 및 의료보험 납부 등록: 인력 고용을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세(고용주분) 납부를 위해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에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종업원 고용 후 8일 이내에 각 지역별 사회보장사무소에 등록하고 또한 8일 이내에 의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된 의료보험사에 의료보험을 등록해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실제 소유자 등록: 기업이 범죄나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경우 기업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EU AML(Anti-Money Laundering) 유럽지침을 기반해 2018년 1월부터 기업의 실제 소유자 정보등록 제도가 발효됐다. 모든 회사는 2019년 1월까지 회사의 실제 소유자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18년에 실질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실제 소유주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등기법원에 의해 관리되며, 포함돼야 할 정보는 실 소유주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Rodné slo), 국적, 기업과 실 소유주의 관계증빙 등이다. 실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돈세탁 방지에 관련하여 고객의 신원조회가 요청된 경우에만 특정 기관과 개인에게 공유된다. 부동산업체나 금융기관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법적실체(기업)의 실제 소유주 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 및 금융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

- 데이터 메일박스(Datova Schranka): 데이터 메일박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각 법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전달 및 수신하기 위해 각자의 데이터 메일박스를 보유하게 된다. 데이터 메일박스는 상업 등기소 등록 후 각 법인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주소로 고유 로그인 정보가 발송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인은 데이터 메일박스를 통해 세금 등록 및 세금신고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 메일박스를 통해 공공기관과 전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보낸 후 10일 경과되면 공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오랫동안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데이터 메일박스를 정기적으로 로그인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사

지사는 독립법인인 자회사(Subsidiary)와 독립법인체가 아닌 지점(Branch)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독립법인인 자회사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친다. 외국기업의 지점(Branch)은 체코법인(Czech legal entity)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회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며, 해당 외국회사를 대신해 의무가 발생한다. 본사(외국기업)를 대신해 회사 설립, 합작 투자, 기존 기업인수 및 판매, 부동산 취득 등 모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기업 설립 근거 규정이 지사의 내부활동에도 적용된다. 지점의 경우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모회사의 결정으로 쉽게 해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프로젝트성 일을 하기 위해선 해산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인보다 적합한 진출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점의 지점장은 모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지점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지사 설립: 자회사는 독립 법인체로써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형태에 따라 법인과 동일한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다. 지점의 경우 법인 등록과 유사하며, 지사 개설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영업허가서 발급 후 지점 등록신청서에 지점의 향후 활동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상업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지점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영업 허가소에서 영업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후 상업등기소에 등록한 후 세무서에서 납세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설립자의 설립각서나 자본금 예치가 필요 없다. 지점명은 모회사명 뒤에 지점이라는 의미의 'odstepny zavod'가 붙는다.

연락사무소

체코에서는 연락사무소의 형태의 회사형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점을 설립해 연락사무소로 운영이 가능하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체코의 주식회사(a.s.: Akciová Společnost / Joint Stock Company)는 등록자본금이 특정 액면가의 주식으로 분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설립된다.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주주(법인 또는 개인)가 작성한 정관으로 설립되며,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명은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Akciová společnost" 혹은 주식회사의 약자인 "Akc. Spol.", "a.s."를 포함한다.

- 주식발행: 주식회사는 주식증서 또는 장부상 주식의 형태로 무기명 또는 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무기명 주식증서는 금지됐고 기존의 무기명 주식증서는 은행에 동결(예치)하거나 장부상 주식으로 교환해야 한다. 무기명주식의 양도는 제한이 없

으나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양도 승인 요구 등으로 제한받을 수 있으나 정관에는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기명주식 증서는 구두, 서면, 계약, 배서, 주식의 인도에 의해 양도 된다. 장부상 주식은 새로운 주주가 중앙증권예탁원에 등록됨으로서 양도된다.

- 등록자본: 최소 등록자본은 200만 체코 코루나이며, 특별법에 의해 유로화 장부기록이 허용되는 회사의 경우 8만 유로이다. 회사등록을 상업 등기소에 신청하기 전(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그 이전)에 등록자본의 최소 30%가 불입 완료되어야 한다.

- 집행기구: 주식회사의 집행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 임원은 주주총회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감사회)가 선출하고 해임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감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활동 및 주식회사 운영사항을 감사하는 감사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회사직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감사회 구성원 1/3을 직원이 선출한다. 이 의무사항은 2017년 1월에 도입됐으며, 기존에 도입하지 않았던 회사는 2019년 1월까지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 주식회사는 이사회나 감사회 대신 관리위원회 및 단독 이사를 둘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s.r.o.: Spolecnost s Rucenim Omezenym /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체코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형태의 한 가지로,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선택하는 회사 설립방식이다. 설립자가 1인인 경우 회사 설립증서(Founder's deed)를 작성하고 설립자가 50명 이하 또는 그룹인 경우, 회사설립계약서(Memorandum of Association)를 작성한다. 이러한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명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회사명에는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하는 행정적인 약자 spol. S.r.o.“ 혹은 s.r.o.“가 포함된다.

- 등록자본: 회사의 등록자본은 주주가 제공한 출자금으로 구성된다. 각 주주가 출자하는 최소 등록자본은 1코루나이다. 그러나 적은 출자금의 경우 파산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법인설립 시 일반적으로 최소 1만 코루나 이상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회사를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현물 출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는 현물 출자, 전문가가 결정한 가치, 그 가치를 결정한 전문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업등기소에 등록하기 전, 최소 납입 출자금의 30%는 불입되어야 한다. 납입 자본금의 분할기간은 설립 후 최대 5년 이내이다.

- 지분관계: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주의 회사 참여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지분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한 각 주주의 출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지분 당 투표수는 1코루나 당 1투표권(조합규약에 의거,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음)이며, 부채에 대한 책임은 상업 등기소에 등록된 지위에 따라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쉽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자신의 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양도가 제한되지 않고 조건이 붙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공용인증서(Common Certificate)"라 불리는 공인증서를 통해 양도할 수 있다.

- 집행기구: 유한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식회사보다 더 간단하다.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고, 유한회사의 집행기구는 한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이사 수가 제한되지 않지만, 설립자 증서 또는 회사설립계약서에 이사의 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상임이사는 주주총회(회사의 최고 기구) 또는 주주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독 주주가 임명한다. 각 상임이사는 설립자 증서나 회사설립계약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C: Osoba Samostatne Vydelečne Cínna)는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로,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설립등기 필요 없이 영업 허가서(Trade license) 등록으로 사업 개시 가능하다. 기업이연금 및 자금의 개인적 사용이 자유로우나, 기업채무에 대해 대표자는 무한책임을 진다. 통상 체코 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부동산업(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활동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영업허가 신청에는 사업종류에 따라 일반 신청부분과 특별 허가 신청 부분이 있다.

- 영업 허가서 신청 서류

- 신청서 제출(이름, 국적, ID 번호, 생일, 영구거주 정보, 체코에서 거주와 거주 허가증서, 체코 내 사업장소와 구체적인 분야 기재)

- 무범죄경력 증명서(공증 번역 필요, 3개월 이내의 문서만 효력)
- 외국인일 경우 거주허가증 제출(장기체류 비자 또는 장기 거주허가증)
- 사업장에 대한 법적 증빙(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확인서)

○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거주 허가증이 필요하고 거주 허가 기간 동안까지 영업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장기거주 허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영업 허가소(Trade License Office)에 임시 확인서(신청자가 영업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확인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장기거주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시 허가서는 제한적으로 유효하며, 임시 확인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기거주 허가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KPMG (Korean Desk)

전화번호	+420)222-123-101
주소	Pobrezni 1a, 186 00 Praha 8
홈페이지	http://www.kpmg.cz
이메일	minsungkim@kpmg.c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민성 회계사(Min Sung, Kim))

○ Deloitte (Korean Desk)

전화번호	+420)737-210-722
주소	Prokesovo namesti 2020/6, 702 00 Ostrava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cz/cs.html
이메일	hyungsokim@deloittec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형수 회계사(Hyung Soo, Kim))

○ Advokatni kancelar FUTEJ &Partners

전화번호	+420)777-111-427
주소	Thakurova 676/3, Dejvice, 160 00 Prague 6
홈페이지	http://www.futej.cz
이메일	park@futej.s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병성 변호사(Byung Sung, Park))

○ Wilson &Partners

전화번호	+420)277-779-211
주소	Revolucni 1, 110 00 Prague 1
홈페이지	http://www.wilsonscee.com
이메일	bryan.wilson@wilsonscee.com

◦ Iora Legal, Advokatni kancelar

전화번호	+420)606-810-032
주소	Novodvorska 1010/14, 142 00 Prague 4
홈페이지	http://www.iora.cz
이메일	petr@iora.cz

<자료원 : 각 회계/법무 법인 홈페이지, 프라하 무역관>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법인 종료(폐지) 개요

법인 폐지는 말소와 소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상업등기에서 법인을 삭제하는 것은 말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인을 청산과 함께 폐지할 것인지 청산 없이 폐지할 것인지 결정된다.

○ 자진 종료결정의 종류

- 법인 설립의 기한 만기
- 법인이 설립된 사업목적 달성
- 법인 내 관련조직의 법인 폐지 결정
- 법인 내 관련조직의 법인 연립, 법인 자산양도, 분할, 사업 변경 등의 결정

○ 강제 종료결정의 종류

- 지난 2년간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전년도에 선출된 1년 이상 조직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조직 선출이 없었거나 2년 이상 법인이 운영되지 않았을 때
- 법인이 사업활동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 법인관련 법에 요구되는 조건의 상실 또는 투자가 간의 해결 불가능한 분쟁
- 예비금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 상법 56조의 제3항을 위반했을 때
- 파산에서 자산이 채무변제에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경매가 취소됐을 때
- 자산 부족 관련 신청서가 거절됐을 때

2) 법인 철수

청산 없는 법인의 폐지, 즉 철수는 법인전환(Conversion 또는 Transformation), 합병(Merger), 회사분할(Demerger)의 3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청산 없는 폐지는 법인의 승계자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되며, 청산과는 대조적으로 사업행위를 마치기로 결정한 후에 이루어진다. 청산 없는 법인 폐지에 관한 법은 Act No.125/2008 Coll. 에 명시돼 있다.

3) 법인 청산

○ 청산 및 파산관련 법: 체코는 2004년 5월부터 EU의 Insolvency Act를 처음 적용했으며, 2008년 1월부터 파산 및 지불불능에 대해서는 Insolvency Act인 Act No.182/2006 Coll. (Insolvency and Its Settlement Methods)에 규정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 방법, 각각의 합의 방법이 제시돼 있다. 2017년 7월 1일부로 체코의 파산법의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커버리지 갭(Coverage gap)'을 도입한 것이다. 커버리지 갭은 기업이 부실화 되는 순간 총당해야 하는 부채와 사용가능한 자금(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금)의 차이를 말한다. 만약 커버리지 갭이 총당해야 하는 부채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회사는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청산 조건: 채무자가 다수일 때, 30일 기한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3가지의 경우, 법원은 지급불능으로 판단해 파산 관련 법에 의거해 법인의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지불불능 신청의 자격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있다. 이 중 파산위험에 대해서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 파산등록(insolvency register) 공시: 파산자(기업), 상태, 법에 정해진 과정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시된다. 또한, 법원의 서류도 상당 부분 공시되므로 채권자들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모니터링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 등록은 상업등기소 사이트(justice.cz)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 USD = 22.802 CZK (체코 중앙은행, 2018년 12월 5일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646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162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5
비고	체코에서는 직종별 임금체계로 직종에 따른 임금차이가 크며, 또한 지역별로도 임금차이가 크게 발생함. 학력 보다는 경력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대학졸업자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대학 졸업생이라고 해도 경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함. 또한, 체코에서는 한국처럼 대규모 대졸 공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대졸 사무직 초임으로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따라서 위의 대졸 사무직 초임은 영업직에서 3년 이하 경력의 월평균임금 기준(프라하 기준)이며, 고졸 생산직 초임도 제조업의 생산직의 월평균임금 기준(프라하 기준)으로 학력은 고졸에 국한되지는 않음.				

<자료원 : Grafton Salary Guide (2018년 1분기 기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 노동법 및 고용관계 관련 법규
 - 노동법(The Labour Code) Act No. 262/2006 Coll.,
 - 고용법(The Employment Act) Act No. 435/2004 Coll.,
 - 노동감독법(Labour Inspection) Act No. 251/2005 Coll.,
 - 최저임금 및 위험근무수당 관련 법령(Goverment Decree on Minimum Wage and the Lowest Levels of Guaranteed Wage, Definition of a Hazardous Work Environment and Extra Pay for Work in a Hazardous Work Environment) Decree No. 567/2006
- 노동계약 포함내용: 체코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 장소, 근무 시작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고용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월 급여 및 지급일, 휴가, 종업원의 의무, 경쟁회사 취업 금지 조항(퇴직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및 수습기간(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이다.
- 노동계약 기간: 계약 기간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며, 기간이 고정된 고용계약의 경우 기간으로는 최대 3년까지 또는 횟수로는 최대 2회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으면 안 되며 서면상으로 동의돼야 한다.
- 근로자(피고용인) 권리: 근로자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다른 고용주를 위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동시에 하나 이상의 고용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각각의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는 서로 관련이 없다. 또한 근로자는 피고용인의 의무, 휴일, 급여, 급여 지급일자, 근무시간, 직무기술서, 계약 만기, 공동 합의사항 등과 같은 권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계약서에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 고용주 의무: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모든 종업원들 또는 새로운 종업원에게 고용관계의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고용기간, 휴일, 사회보장세 및 건강보험료 지급여부, 회사에 대한 종업원의 의무, 종업원의 연간 급여 등 상세내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종업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어도 종업원의 4%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체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분기 및 3분기 월 평균임금의 1.5배를 부족한 종업원 수만큼 노동 사무소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고용 관계에서 일어

나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 조치는 금지된다.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체코의 법정 근로시간(초과근무 제외)은 주당 40시간이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하루 최대 8시간이다. 근로시간은 매일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식시간: 근로자가 최소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4.5시간 연속 근무 시 최소 30분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가 끝난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12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 시간 외 근무: 시간 외 근무는 고용자가 예외적으로 심각한 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당 평균 8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근무는 종업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평균 주당 8시간, 연속 26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직 노사간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을 맺은 경우에만 최대 연속 56주로 연장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최소 125%를 지급해야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만큼 근무일수에 휴가를 주거나, 시간당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야간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10%를 지급해야 한다.

휴가

○ 연차휴가: 최소 60일을 계속해 근무한 경우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연차휴가(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상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에 따른 휴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연간 5주의 휴가가 적용된다.

○ 출산 및 육아 휴가: 출산 휴가는 최근 2년 이내 근속 일수가 270일(약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28주(쌍둥이는 37주)이며, 육아휴가는 아이가 4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어머니의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후부터, 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육아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정부지원금을 받음), 육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병가: 병가의 경우 처음 3일간은 무급이며, 차후의 추가적인 14일에 대해서는 임금의 60%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15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을 통해 정부가 부담한다.

해고

노동법상 고용계약은 합의에 의한 경우 해고 통보, 즉시 해고, 수습기간 중의 해고, 고용계약의 만료 또는 피고용인의 사망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코 내 거주 허가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경우에도 노동계약이 해지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계약의 해지는 관할 노동 사무소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고용계약 만료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돼 있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에 의해 계약 종료일에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 합의를 작성해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1부를 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이 요구하는 경우 동 합의서에 계약 해지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해고

○ 해고 사유: 피고용인은 2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 회사 청산 및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생산제품, 기술, 생산성 향상 또는 조직 개편에 따라 잉여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 피고용인이 주어진 업무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고용주의 서면교정 통지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장기적인 건강상 문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 재배치에 피고용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 집단해고(구조조정): 고용주가 고용주(혹은 고용주의 부서)의 청산이나 사업수행의 중단, 고용주(혹은 회사나 조직의 일부)의 이전 및 재배치, 조직의 변화 등의 특정한 이유로 인해 노동법에 정의된 특정 수의 종업원과 30일 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집단해고로 간주된다. 이 경우, 2개월의 통지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집단해고의 영향하에 있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종업원이 종료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방 노동청에 해고에 대한 최종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보낸 날로부터 연속하는 30일 이전에는 종결되지 않는다. 통지 해고가 있기 최소 30일 전에 고용주는 서면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에 알리고, 일시 해고의 범위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들과 협상을 수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영향을 받는 모든 종업원들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동시에 고용주는 지방노동청에 일시 해고 및 이에 대한 최종결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와의 협상 결과와 일시 해고의 최종 인원수 및 합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해고 통지: 고용주나 피고용인은 최소 2달 전(구조조정에 따른 정리 해고의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서면 통보가 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철회 통지 및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습기간 동안 고용계약은 양측의 요구에 의해 이유 없이 해지가 가능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종료일 이전 최소한 3일 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 통지 최소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협의회(Work Council)와 관할 노동 사무소에 사유와 해고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금

체코는 한국처럼 퇴직금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사하거나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고용계약이 부서청산, 사업수행중단, 고용주의 이전, 재배치, 조직의 변화 등으로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해지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1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는 2개월 분의 평균급여를, 2년 이상인 경우 3개월 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임산부, 취약계층을 부양 중인 근로자 등에게는 특별해고조건이 적용된다. 산업 의료 서비스 공급자 또는 관할 행정 기관에서 피고용자가 산업 재해나 직업 질병, 또는 직업 질병의 위협에 노출돼 있어 더 이상 현재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와, 공공 건강 보호기관의 지배 하에서 피고용자의 작업장이 유해의 최대 허용한도에 노출됐음을 증명한 의료진단서를 발행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최소 12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체코인뿐만 아니라 체코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 증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 체코의 건강보험제도는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병원에서 가입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료비는 대부분 무료(미용성형, 침술, 미용목적의 치과 치료 제외)이다.

체코에서 건강보험(Zdravotni Pojisteni)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건강보험 가입 시 7곳의 보험회사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

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을 공제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정부에 의해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지 않는 사람(26세 이상 주부이거나 노동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실업자 등)은 의료보험에 가입해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 요율

- 건강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13.5%로 근로자 4.5%, 고용주는 9%를 부담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13.5%를 부담함.

○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는 경우

- 26세 이하의 부양 자녀
- 노령연금 수령자 및 장애연금 수혜자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가 중인 경우
- 최대 7세까지의 아동 또는 15세까지의 두 명의 아동을 전일제로 돌보는 사람
- 노동사무소에 등록된 구직자
- 저소득층으로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과 보호자

고용보험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체코에서 지난 3년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 실업수당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EU시민으로서 거주 비자를 소유하거나 EU가 아닌 제3국 시민의 경우 영주권을 소유해야 하며 동일하게 지난 3년간 최소 12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 고용보험 요율

- 고용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 1.2%로 고용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담은 없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1.2%를 부담함.

○ 실업수당

- 구직자로 등록된 실업자(지난 3년간 12개월 이상 사회보장세 납부한 경우)만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을 받는 구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50세 미만의 경우 5개월, 50세에서 55세까지는 8개월, 55세 이상인 경우는 11개월임.
- 실업수당 및 재교육 수당 금액은 이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처음 2개월은 이전 평균 근로소득(세후기준)의 65%, 그 다음 2개월은 50%, 나머지 기간은 45%로 산정됨. 단, 심각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전 기간 동안 이전 평균 근로소득의 45%를 받을 수 있음. (단, 실업수당 및 재교육 수당의 한도는 이전 연도의 체코 전체 평균임금의 58%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음(2017년의 경우 15,660체코 코루나))
-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이전 보험료 기준의 처음 2개월은 65%, 그 다음 2개월은 50%, 나머지 기간은 45%를 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

산업재해(Accident at work, Pracovni uraz)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로, 작업장에서 휴식시간에 발생한 상해도 포함된다. 단, 출퇴근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업병과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종업원이 입은 피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주가 매 분기별로 직원 수와 임금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며, 근로자의 부담은 없다. 산업재해보험은 고용 계약 체결 시 모든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s, Nemoc z povolani)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유해 요인으로 인해 얻은 질병으로, 직업병으로 간주되는

질병은 정부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피부질환 등 6가지 분야의 85가지의 직업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병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보상 시스템을 적용될 수 있다. 직업병은 체코 내 18곳이 있는 직업병 센터(Stredisko nemoci z povolani)에서만 진단 권한이 있으며, 일반 의사를 방문해 직업병 센터 방문 진단서를 발급해 받을 수 있다.

○ 산업재해 보상 자격조건

- 업무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 혹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고
-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직원이 부상을 입어야 함.
- 부상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며, 직원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아야 함.
- 직원이 안전규정을 심각하기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직원은 사고 당시 취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함. (보통 부주의는 무모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 보상

- 수입상실 대한 보상: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 불가능한 경우 질병 보험이나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은 사고 이전 급여를 기초로 결정된다. 고용주는 사고 당사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고통에 대한 보상: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일회성으로 일시불로 지급된다. 금액은 직업병 센터의 의학적 평가 점수에 의해 산정되며 각 점수당 250체코 코루나가 지급된다.
- 치료비 보상: 건강보험으로 부족한 치료비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의약품 비용,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 손상에 대한 보상: 산업재해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품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의류, 수하물, 차량 등의 물품에 대한 손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활동(예를 들면 가족 돌보기)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 사망 보상: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치료비, 장례비, 유족 생활비, 일시 지급 위로금 등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금보험(노령연금, Starobni duchod)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연금보험은 체코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며, 65세(1971년생 이후) 이상부터 연금보험 납부기간을 만족한 경우(2018년 이후 35년간 납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 요율

- 연금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총 28%로, 고용주는 21.5%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6.5%를 부담함.
- 질병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28%를 부담함.

○ 연금보험 납부 기간(피보험 기간)

- 납부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2018년 이후인 경우 35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함.
- 노령연금 수령시기가 2010년 이전인 경우는 25년간 납부, 2012년부터는 28년, 2016년부터는 32년임.

질병보험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질병보험(Nemocenske pojistení)은 사회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월임금이 2500체코 코루나 이상인 근로자의 질병보험은 가입은 의무(고용주가 부담)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기계약근무자(Dohoda o provedeni prace, 연간 300시간 미만으로 근무 계약을 맺은 경우)의 경우 월소득이 1만 체코 코루나 이상인 경우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질병보험 가입자는 근로 중 질병이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질병보험 요율

- 질병보험 요율은 보험료 기준(근로소득)의 2.3%로, 고용주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없음.
- 질병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의 2.3%를 부담함.

○ 질병보험 혜택

- 근로자는 고용계약 첫 날부터 질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질병보험 납부 후 3개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병가를 낸 경우) 3일까지는 무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병가 4일째부터 14일째까지는 유급으로 고용주가 임금을 부담하며, 15일째부터는 질병보험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15일째부터 질병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족 구성원 돌봄 혜택

- 질병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임. (개인사업자와 단기계약근무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가족 구성원의 병간호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유치원이나 학교가 쉬는 경우 10세 미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유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 배우자가 출산수당이나 육아수당을 받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단, 배우자가 아프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사회보장세 한도 및 신고

- 사회보장성 보험 한도: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 2008년부터 사회보험 적용대상 소득의 한도(체코 월 평균임금의 48배)가 설정돼 더 높은 소득에 대해서도 이 한도 금액까지만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 2019년의 경우 사회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1,569,552체코 코루나임.
 - 건강보험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사회보장세 신고: 근로자의 채용 또는 퇴직이 발생한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장보험은 각 지역별 사회보장보험공단(CSSZ)에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희망 건강보험 회사에 따라 VZP, RBP, OZP 등 다양한 보험사에 신청한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체코 정부는 기업들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왔으며, 2010년 이후부터 19%가 적용되고 있다. 법적 실체가 아닌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PE)의 경우, 해외법인이 현지에 과세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해외 법인은 체코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외국회사가 회사의 고용인(직원)이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체코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 받는 경우를 고정 사업장이 형성된다. 다수의 고용인이 체코에 머무는 경우 각각이 머무는 날짜가 모두 누계로 계산된다. 특정 이중과세협정에 의해 고정 사업장 형성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해외 법인이 고정된 장소(사무실, 작업장, 생산설비, 판매대리점, 기타 사업설비)를 체코에 세울 때도 고정사업장이 형성된다. 이중과세 협정은 체코에서 고정사업장이 형성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행위가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 일 때이다.

개인소득세

체코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자는 체코 영주 거주자 및 체코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들이며, 이 외의 경우에는 체코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은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 과세표준을 사회보장세의 근로자 부담분 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도 포함(월 총임금의 1.34배)함으로써, 평균 실효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5%보다 높아진다. (소득에 따라 다르나,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포함하면 세전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총 세전임금의 대략 30% 정도임)

단, 고소득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추가 연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대 기여금은 사회보장세 적용 최대 한도(월평균 임금의 48배, 2019년 기준 연간 1,569,552체코 코루나)를 초과하는 고용 소득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해 7% 세율로 적용된다. 7% 연대 기부금을 납부 한 개인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세 소득에는 현물급부(예: 주택 수당, 개인용도의 회사차 사용 등), 사업 활동 수입 및 자본 소득, 임차료 및 기타 출처에서 얻은 수입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과세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말 이전)에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 체코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지사에 의해 직접 고용된 외국인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고용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현지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지점)는 소득세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가 고용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체하는 연말정산서를 준비해 준다. 외국 회사가 계약에 따라 체코 회사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역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도 세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반기 또는 분기별 선급금을 납부하고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 개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요율: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요율은 고용주의 경우 총 34%, 근로자의 경우 총 11%임.

- 건강보험: 13.5%(고용주 9%, 근로자 4.5%)
- 사회보장보험
 - 연금: 28%(고용주 21.5, 근로자 6.5%)
 - 질병보험: 2.3%(고용주 2.3%, 근로자 0%)

· 실업보험: 1.2%(고용주 1.2%, 근로자 0%)

○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산정 간단 예시

- 월 총 임금(Gross Wage, Hrubá mzda)이 50,000체코 코루나 일 경우,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은 총 임금(Gross Wage)이 아닌 고용주의 건강보험과 사회보장보험 요율인 34%를 포함한 금액(Super Gross Wage, Super Hrubá mzda)임.

· 소득세 계산식: $[50,000 + 50,000 \times 0.34] \times 0.15 = 10,050$ 체코 코루나(소득세 할인 및 감면 적용 안한 금액)

부가가치세

체코의 부가가치세법은 Act No. 235/2004 및 EC Directive 2006/112 의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체코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역내구입 및 일반적인 수입에 대해 부과된다. 체코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Turnover)이 100만 코루나(약 4만6950달러)를 초과하는 업체는 VAT 납부자로 등록 후 VAT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 거주 기업의 경우 체코의 VAT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VAT 신고 및 납부의무가 수령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체코에서 타 EU 회원국으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VAT 납부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는 2013년부터 21%가 적용되고 있다. 식품류(과자, 커피, 차 등 포함), 음료, 의료치료(Medical Treatments)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5%가 적용된다. 2015년 1월부터 특정 서적과 제약품,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모든 호텔 및 숙박업과 식당을 시작으로 시행된 EET(전자매출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등록단말기 구입 및 설치 등의 비용항상을 고려하여 식당에서의 식음료(주류 제외) 서비스에 대한 VAT를 기존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부가세 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0% 영유아용 식품, 특정도서, 특정계약
- 15% 식품, 식음료 서비스(주류제외), 대중교통서비스, 사회주거주택 건축
-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재화의 수출과 수입을 비롯한 수출입 물품의 국제운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보험 및 금융 관련 용역
- 우편 관련 용역
- 교육
- 건강 및 복지 관련 용역
- 특정 조건하의 부동산 양도나 금융리스
- 부동산의 임대(단기리스, 주차장리스 및 귀중품보관소의 리스를 제외)

기본 과세 보고기간은 1개월이며,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전년도 매출액이 100만 코루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 보고기간을 분기로 선택할 수 있다. VAT 환급신청은 과세기간 후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의무 납세자들은 전자 부가가치세 관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체코 내 등록된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에게만 적용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 명세서는 www.daneelektronicky.cz/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체코어로만 서비스된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거나 주 예산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간접세 중 하나이다. 체코의 특별소비세는 과세 품목 가격의 50%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해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체코에서 생산되거나 체코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며, 세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다.

○ 주요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 및 세율

- 담배: 27%, 1개당 1.46 체코 코루나 부과 (최소 세금금액 1개당 최소 2.63 체코 코루나)
- 스파클링 와인: 100L당 2,340 체코 코루나
- 기타 품목의 특별소비세 상세 내역 : <https://www.businessinfo.cz/cs/clanky/prehled-sazeb-spotrebnich-dani-3475.html> (체코무역청 제공 Businessinfo 포털, 체코어로만 지원, 구글번역 사용)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체코 코루나는 완전하게 태환 가능하며 2017년 4월 체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결정하면서 현재 환율제도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체코 코루나가 움직이는 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다.

1) 2013년 11월 ~ 2017년 4월까지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개요

체코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예방 및 인플레이션 2% 수준으로 유지해 체코 물가와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외환개입을 통해 유로화 대비 체코 코루나 환율을 27코루나/유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3년 IMF가 제안한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 이전인 2013년-2013년 24.7~25.9코루나/유로 수준이던 환율이 개입 이후에는 27 코루나/유로 수준으로 유지됐다.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시작된 이후 체코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2013년 11월 체코중앙은행의 환율 개입 이후 2014년 체코의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7.5% 증가를 기록했다.

2) 2017년 4월 6일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중단

2016년 말 원유가격 상승을 반영한 식품, 연료가격 상승 및 임금상승의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초과하고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이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측됐다. 환율 유지를 위한 투입금액도 점차 늘어났다. 2013년 11월 환율시장 개입 이후로 27코루나/유로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총 약 2조 코루나를 투입했으며, 2017년 3월에만 약 5000억 코루나(약 200억 달러)를 투입했다.

중앙은행은 2017년 4월 6일 임시 금융정책회의의 열여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결정하고 즉시 발효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의 주요 목표가 달성됐다는 관점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의 중단은 코루나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일 것임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은 필요하다면 과도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3) 외환시장 개입 중단 이후 환율 변동 추이

외환시장 개입 중단 이후 환율은 예상외로 큰 폭의 변동이 없었으나 유로 대비 코루나 환율이 기존 27CZK/EUR에서 25CZK/EUR 수준으로 내려가 지속적으로 체코 코루나가 유로화 대비 강세 양상을 보였다. 체코 중앙은행 2018년 12월 7일 고시 기준 환율은 25.850CZK/EUR였으며, 체코 재무부는 가장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 평균 환율은 25.5CZK/EUR, 2019년은 24.9CZK/EUR로 전망했다.

외환 규제

체코의 외환관리는 1995년 10월 1일부로 신외환법이 발효되면서 코루나화의 완전 태환이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로 경상 거래의 완전 자유화 및 자본 거래의 자유화가 실시(IMF 8조국)됐으며, 체코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자유화, 기업 및 개인의 외환 계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 보유 무제한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의무 준비금(reserve fund)과 원천징수세 납부금을 제외하고 체코의 자회사가 외국 모기업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체코의 인구는 약 1000만 명(2018년 6월 기준)이다. 이 중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2%이며,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4세이다. 1인당 GDP(PPP기준) 약 3만 달러이며,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017년 가계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등 가계 내 가처분 소득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이다. <자료원 : 체코 통계청 >

소비 성향

체코는 과거 동구권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 비교적 풍족한 소비 수준을 누렸으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직 월평균 소득이 1,500달러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중·저가 품목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체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충동 구매 성향이 약한 편이고 다소 엄격한 계획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유명상표에 대한 맹종 현상이 낮은 편으로, 상품 구입 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증가에 따라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유명상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생활 수준은 월평균 명목 임금이 2018년 3분기 기준 31,516 코루나 정도로 서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저렴한 기초 의식주 비용, 교육비 및 의료비의 전액 정부 부담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다. 특히 운동용품, 레저용품, 문화용품 등은 고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 정부의 사유재산 반환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은 계층이나 신흥 비즈니스맨 등은 고급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3% 내외는 가격에 관계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크리스마스, 부활절 기간 중 구매가 활발하며, 7~8월의 휴가철은 구매 활동이 침체되므로 이를 대비해 수입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1~2월 및 9~10월에 수입을 확대한다.

○ 소비자 구매 선호도

2015년 들어 유럽 내 최저 실업률과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2017년 GDP 성장률은 연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4.5%를 달성했다. 이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더불어 유럽 내 최저 실업률이 내수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체코인들의 전반적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환경, CSR, 국내산 제품 구입 선호 등 새로운 소비 패턴이 도입되고 있으며, 제품도 복잡하고 화려한 것보다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또, 계속되는 저가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대형 소매업체의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체코인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점점 건강, 교육 통신 산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 온라인 구매 증가

현지 언론에 의하면, 연중 가장 소비가 증가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온라인을 통한 구매만 최소 210억 크라운(약 9.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는 1인 평균 3,000~5,000크라운을 소비하는 셈이다. 특히 1,000크라운 이상의 단가가 비싼 품목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구매 성향이 두드러졌는데 가전제품 및 기타 전자제품의 인터넷 구매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이 향상되고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구매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온라인 시장규모는 약 42억 5,200만 달러(약 980억 코루나)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온라인 유통시장은 2001년 이래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4G 보급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제품 구매 역시 증가 중이다. 까다롭고 합리적인 소비로 유명한 체코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이나 스포츠 용품, 자동차 용품, 완구류, 의류, 애완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며, 휴가철 여행상품권이나 할인 쿠폰도 인기가 좋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시 집으로 직접 배달받는 것보다는 매장에서의 픽업이나 근처 무인택배함을 통해 물건을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은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오프라인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보여진다.

한국 상품 이미지

현대자동차가 체코 오스트라바 지역에 생산공장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판매 신장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일반 생활 소비재의 현지 시장 진출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여타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3년 한국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프라하에 진출했는데, 현재까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용해본 고객을 중심으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달팽이 크림, 비비크림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회용 마스크가 가장 인기가 좋다. 또한 유럽 내 유명 화장품 전문매장인 SEPHORA에 한국 화장품 코너가 입점되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품질이 SNS나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화장품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역시 한국산 화장품을 찾는 등 그 인기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K-POP의 경우, 2012년의 팬클럽 가입자가 약 200명에서 2013년 약 2000명으로 K-POP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전 세계를 휩쓴 강남스타일이 체코의 소도시 초·중·고등학생층까지 확산된 영향과 'K-POP 월드페스티벌 2012'에서 체코 팀이 퍼포먼스 부문 1위를 수상하면서 더욱 증폭된 것으로 추정된다. 'K-POP 월드페스티벌'의 주최와 진행을 맡고 있는 'Czech Hallyu Wave'(한류 팬클럽)에 등록돼 있는 공식 멤버는 약 1,200명이고 팬클럽은 32개이다. 2000년부터 체코에서 꾸준히 상영되고 있는 한국영화도 점차적으로 고정적인 팬층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매년 프라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영화제 FILMASIA에서는 최신 한국 인기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다. 체코뿐 아니라 중동부 유럽에서 중요한 영화제로 간주되는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에서 매년 한국작품들이 초청되며 한국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 식당은 프라하 지역에 12개, 한국 식품점은 '신푸드', '나의 살던 고향' 등 4개다. 한국음식은 일본 음식 보다 저렴하나 현지 음식보다 약 2~3배 비싸 중국음식과 같이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음식을 접한 체코인 중 한국음식 애호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관광객 숫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식당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체코 수입업계의 거래방식과 관련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의 어떤 회사로부터 특정 제품을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제품 공급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제 3의 기업에서 상당히 좋은 거래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쉽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코 수입업체들이 이러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독일 영향으로 안정 지향적인 사업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어 신규 진출을 시도하는 업체에는 상당한 인내를 요한다. 그러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고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체코 바이어들도 기존 거래선 외의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부유럽에 속한 체코는 이미 개방화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한국 기업이 이미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한국상품 및 기업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순조로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시장 특성과 수입 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가 체코 수입업체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거래 관련 종합 정보 일괄 송부

체코 업체들은 생소한 외국업체와 처음 접촉을 시작할 때 갖은 교신보다는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즉, 거래 희망 서신,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처음에 종합적으로 송부한다면 체코 업체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간단한 자사 소개와 거래를 희망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회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코 업체와 교신을 시작할 때에는 체코 진출을 위한 가격 설정에 철저히 준비해서 접근해야 한다.

2) 샘플 요청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체코업체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샘플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체코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제품을 생소하게 여기기도 하며, 특히 운송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한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강점으로 앞세워 체코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체코 업체들은 샘플을 통해 제품의 상태, 품질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특히 저가의 소비재, 화장품의 경우 관행적으로 무료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하며 샘플비용 및 운송비 역시 지불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3) 지속적, 적극적 사후관리

거래에 필요한 종합 자료를 송부하고 2~3주 후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토 결과를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체코 업체에서 회신을 해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 기업이 송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체코 역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점, 긴급하게 필요한 품목이 아닐 경우 메일에 대한 회신이 늦은 편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체코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해올 경우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에 국내업체 측에서도 바로 교신에 응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한 경우,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우리 업계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데, 상담 시 약속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사의 제품정보를 제공해 바이어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단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면 지체 없이 응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답신을 하겠다고 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상담에서 거래 성사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산업재의 경우에는 1~2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우리 기업의 각별한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4) 거래조건 제시 시 유의사항

체코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주로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격을 제시할 때 FOB Korea(Busan)보다는 CIF Hamburg로 하는 편이 바이어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수출가격은 비교적 여유 있게 책정하되, 최소 주문량은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특히 첫 거래인 경우)이므로 최대한 낮추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거래 시 가격 오퍼를 받은 경우, 체코 바이어들은 가격이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을 경우 가격협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바로 상담 진행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바, 가격 협상을 염두에 둔 가격 제시보다는 실제로 받을 가격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가격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체코 업체에 가능한 가격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현지 문화와 잘 맞지 않아 거부감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급적이면 피하고, 품질과 A/S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산출한 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수의 체코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근 국가의 대형 수입상을 통해 외국산 물품을 간접 수입해 오고 있다. 즉, 체코 바이어들의 자본력이 아직은 취약한 관계로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데 따른 거래조건(한국 수출업체의 L/C 또는 T/T 선호, 약 2개월의 인도기간, 높은 수준의 최소 주문량 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반면, 소량씩 적기(일주일 내)에 외상(60~90일)으로 공급해주는 인근 국가의 대형 바이어로부터 간접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체코는 외상거래가 일반화돼 있으므로, 가급적 바이어의 대금결제 조건을 수용하되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수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5)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체코의 경우 사회주의 생활양식 및 의식이 아직도 중·장년층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코 바이어의 거래관행을 수용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체코 바이어들은 비 L/C 거래를 선호하고 거래 착수 시부터 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거래 관행과 자본력 취약에 따른 독일 등 주변국의 수출업자들이 신용 거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L/C 거래가 선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선 주요 은행들이 L/C 개설 시 수입 금액의 110% 정도의 현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어 3개월 정도 자금 회전이 막혀 금융 부담이 크고, 아직 서구 기준의 현대적인 금융 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L/C 개설 및 조건 변경 등 수속이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은행을 통한 서류 거래로 거래 자료가 100% 노출돼 절세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규모가 커진 수입상이나 대아시아 교역에 익숙해진 수입상들은 점차 L/C 거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경우 주문과 함께 T/T로 20~30%의 선수금 송금 후, 선적 서류의 사본 확인과 함께 잔금 역시 T/T로 송금하거나 30% 정도의 선수금분만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통해 D/P로 거래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외에도, 선수금을 T/T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신용장 개설 또는 은행을 통한 D/P 거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L/C 거래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 사본을 요청,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관해 처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공항세관 등은 수취인 여부만 확인되면 선적 서류 원본 없이도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또한 이메일 탈취 등을 통한 무역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체코를 경유한 입금 사기부터 교신 도중 국내기업 혹은 바이어를 대신하여 이메일을 대신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사기가 진행되고 있어 인보이스 상의 은행명, 은행주소, 수상한 이메일 등은 이중 확인을 통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처음 접촉은 언어 소통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

일반적으로 체코 무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최근 많이 좋아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호간의 오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처음 접촉 시 구두 영어(전화)보다는 e-메일을 이용해 교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체코 비즈니스계의 e-메일 사용은 보편화돼 있다.

2) 이메일을 통한 소통 시 유의할 점

한국에서 오는 이메일이 스팸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메일 발송 후 2-3주 내에 답신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선으로 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코에서 보낸 메일도 한국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거래논의시 KOTRA 프라하 무역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체코업체의 메일을 받은 경우, 완벽한 답신을 바로 할 수 없더라도 수신했음을 알리고 답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답신을 언제쯤 보내겠다고 알림으로써 상대방과 단절 없이 유연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유를 가지고 친절·솔직하고 약속은 꼭 지킬 것

현지 업체들과 연락 시 공격적인 방법보다는 인내심 있고 친절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너무 빈번한 이메일과 전화연락은 체코 업체들이 대체로 불편하게 받아들인다. 체코의 경우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검토 후 거래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시 국내기업과의 교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기업 측에서 주로 당황하는 부분이나 체코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교신을 중단하는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히 알려서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상호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 상담회에 참여했던 바이어들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상담 이후 보내주기로 했던 자료(카탈로그, 가격정보, 비즈니스 모델 등)를 전혀 보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상담 약속은 최소한 2주전에 약속하고 확실한 통역으로 오해를 줄일 것

체코를 방문해 직접 상담할 경우에는 미리 체코 업체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지를 확인 해야 하며, 영어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을 사용해야 원만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약속은 2~3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하며 7~8월, 12월~1월 초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5) 친분을 쌓으면서 장기적 거래로 추진

장기거래가 단기거래 보다 효과적이므로 친분을 쌓으면서 장기적으로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많은 제품들이 체코에서 독일로 수출되므로 체코 진출을 독일로의 관문으로 여길 수도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한국의 G사

G사는 2012년 6월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프라하를 처음 방문했고, 총 6명의 바이어와 상담한 결과 체코에 시장성이 있음을 감지하고, 2013년 3월부터 지사화 서비스에 가입했다.

무역관은 G사와의 협의해 지역사정에 맞는 새로운 가격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이에 따라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기업은 '보호장구(protective equipment)' 관련 체코의 전문 유통업체인 T사로서, 해당 사는 G사 제품 품질 및 가격수준에 전반적인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2013년 12월 처음 체코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약 500일이 지나 드디어 첫 번째 물량이 체코로 발송되기에 이르렀다.

G사는 T사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체코 기업들과의 거래를 예상했으나, 다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2014년 들어, T사와의 거래가 끊기고 G사의 높은 가격을 이유로 다른 체코 기업들과 거래 시작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 이에 G사는 무역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 가격을 최대한 시장상황에 맞춰 바이어들을 접근했다. 한국 생산품으로 가격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G사의 베트남 공장 제품으로 대응한 결과, P사는 새로운 바이어로부터 2015년 약 3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또 P사 뿐만이 아니라 G사의 베트남 생산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또 다른 체코 바이어인 W사와의 거래도 성사됐다.

2) 한국의 B사

B사는 2013년 4월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프라하를 처음 방문, 총 6개사와 상담했다. B사는 본 사절단 참여를 통해 체코에 시장성이 있음을 감지했으며, 상담장에서 만났던 X사와의 거래 성사를 위해 2013년 11월 프라하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했다.

공공조달을 통해 유니폼을 납품 시, 유니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술기준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B사는 샘플 제작 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원단 염색을 위한 염료를 장기간 수소문해 다시 도전하고, 첫 주문 시 바이어의 코멘트를 적극 수용해 2차 주문에는 제품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B사는 X사로부터 17만 달러 규모의 첫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첫 주문의 기쁨도 잠시, X사와 첫 거래 시 B사는 바이어와 네 번의 대면 접촉을 했음에도 첫 거래액 결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라하 무역관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화 및 이메일로 바이어를 접촉했다. 또한, B사의 8월 출장 당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어 미팅에 동석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 무역관에서는 X사와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군복 조달기업인 K사 또한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을 나누고, K사의 문의가 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B사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체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 공공조달 전문기업인 X사와 K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3) 한국의 S사

화장품 제조업체인 S사인 2015년 말 처음 KOTRA 프라하 무역관과 함께 체코 진출을 타진했다. 본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와 첫 화상 상담회를 통해 제품을 소개, P 바이어 역시 제품의 품질에 만족했다. 그러나 높은 가격의 문제로 협상에 큰 진전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OTRA 프라하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어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6년 '한-불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국내업체 S사와 체코 바이어 P사와 1:1 미팅을 주선했다. 체코의 P사 외에도 협력업체인 F사가 동반했는데 P사는 주로 물류, 도매를 담당하며 F사는 체코 로컬의 소매유통을 담당하고 있어 가격 뿐만 아니라 현지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도 큰 진전을 보이게 됐다.

유럽 시장의 화장품 진출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손꼽히는 CPNP 등록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으나, S사는 KOTRA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했다. 지사화 서비스와 더불어 소비자 선도기업으로 현지 마케팅을 지원받으면서 체코 F사와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독점계약을 체결했고 온오프라인의 적극적인 홍보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했다.

제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 뿐만 아니라 확고한 마케팅 전략, 철저한 CPNP 등록에 대한 준비는 S사가 시장 진입할 수 있는 큰 자산이었다. 더불어서 KOTRA의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체코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종류

1994년 11월부터 체코와 한국간 비자면제협정의 발효로 90일 이내 상호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나, 취업 등의 이유로 체코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의 종류에는 고용카드(Employee card, 취업비자), 유학비자, 가족통합을 위한 비자, 방문비자, 치료요양 목적의 비자, 연구를 위한 비자가 있으며, 2012년 6월 1일부로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2) 단기체류

단기체류는 90일 이하의 체류를 뜻하며, 한-체코 사증면제 협정(양자협정)에 따라 단순방문(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의 경우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코에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체코가 2004년 쉥겐협약에 가입해, 쉥겐협약에 따르면 EU외의 제2국의 외국인의 경우 쉥겐국가(유럽지역 26개국)의 최종 출국일 기준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 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체코 정부가 양자협정을 쉥겐협약보다 우선 적용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체코 내에서의 체류에 한해 양자협정상 규정된 요건에 따라 우리나라민은 무비자 또는 유효한 사증을 받아 체코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체코에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90일마다 제3국을 다녀오는 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비자취득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 장기체류 희망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사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2년 6월, 한국과 체코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돼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한국인이란면 취업 및 여행을 목적으로 체코에서 1년간 머물 수 있게 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되지 않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협약에 따라 1년 이내에 최대 300건의 비지만 발급한다.

○ 비자신청 조건

-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단, 유학, 취업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음.)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비자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체코 체류 기간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필요서류

- 지난 10년 이내 발급됐고, 신청하고자 하는 체류기간보다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며, 빈 페이지가 최소한 2면 이상 있는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사진 3매 - 신청서 1매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 체코로 출국하는 항공권 및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 또는 귀국 비행기표 가격에 상응하는 약 1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소지했다는 증명서(아래 은행잔고 증명서의 금액에 추가), 또는 체코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필요한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
- 은행잔고 증명서 및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1년 체류 시 약 600만 원/은행잔고 증명서의 경우 체코어 번역 및 인증 필요),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본(앞·뒷면 한 장에 복사)
- 범죄 경력 여부 진술서
- 체코에서의 여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 체코 내 주거지 및 업무지 주소(신청서에 기입)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주한 체코대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대리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사관에 가서 직접 제출해야 함.

- 비자 취득 후 입국했을 때 3일 이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인당 포도주 2ℓ, 술 1ℓ, 담배 200개비까지는 허용된다. 여행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인 1만유로 상당의 외화는 신고 없이 입국 가능하며, 그 이상의 현금은 입국 시 신고만 하면 출국 시 반출에 문제가 없다. 입국 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반입 품목은 없으나 마약, 무기 등의 반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성 물품의 반출 시는 국가문화재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술

- 알코올 도수 22% 초과 - 1ℓ

- 알코올 도수 22% 이하 - 2ℓ

- 스틸와인(Still Wine) - 4ℓ

- 맥주 - 16ℓ

○ 담배

- 궐연(cigarette) - 200개비

- 가는 엽궐연(cigarillo: 3g 이하) - 100개비

- 엽궐연(cigar) - 50개비

- 엽연(파이프용담배) - 250g

○ 외국환 신고

- 10,000 유로 초과 시 신고(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코로 입국 시)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체코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420-234-090-411
주소	Slavickova 5, 160 00 Praha 6 - Bubeneč
홈페이지	http://cze.mofa.go.kr

○ 체코한인회

전화번호	+420-777-695-732
주소	Na okraji 439/46, 160 00 Praha 6 - Vešlavín
홈페이지	http://czech.korean.net

○ 프라하 한글학교

전화번호	+420-777-797-630
주소	Santrochova 2, Praha 6, Základní škola Petřín Jih
홈페이지	http://www.prahaks.korean.net

○ 체코-코리아 협회

전화번호	+420-774-915-727
주소	Ustav Dalneho vychodu FF UK, Celetna 20,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www.cks-korea.cz

<자료원 : 주체코 대한민국대사관, 체코한인회, 프라하 한글학교, 체코-코리아 협회>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체코정부

전화번호	+420-224-002-111
주소	Nabřeží Edvarda Beněse 4, 118 01 Praha 1
홈페이지	http://www.vlada.cz

○ 체코 산업통상부

전화번호	+420-224-851-111
주소	Na Frantisku 32,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po.cz

○ 체코 외무부

전화번호	+420-224-181-111
주소	Loretanske namesti 5, 118 00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zv.cz

○ 체코 법무부

전화번호	+420-556-779-511
주소	Vysehradska 16, 128 10 Praha 2
홈페이지	http://www.justice.cz

○ 체코 노동복지부

전화번호	+420-221-921-111
주소	Na Poricnim pravu 1/376, 128 01 Praha 2
홈페이지	http://www.mpsv.cz

○ 체코 재무부

전화번호	+420-257-041-111
주소	Letenska 15, 118 10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fcr.cz

○ 체코 내무부

전화번호	+420-974-832-972
주소	Nad Stolou 3, 170 34 Praha 7
홈페이지	https://www.mvcr.cz

○ 체코 교육부

전화번호	+420-234-812-180
주소	Karmelitska 529/5, 118 12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smt.cz

○ 체코 국방부

전화번호	+420-973-201-111
주소	Tychonova 221/1, 160 00 Praha 6
홈페이지	http://www.army.cz

○ 체코 문화부

전화번호	+420-257-085-111
주소	Malezske namesti 1, 118 00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mkcr.cz

○ 체코 환경부

전화번호	+420-267-121-111
주소	Vrsovicka 1442/65, 110 10 Praha 10
홈페이지	https://www.mzp.cz

○ 체코 지역개발부

전화번호	+420-224-861-111
주소	Staromestske namesti 6,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mmr.cz

○ 체코 보건부

전화번호	+420-224-971-111
주소	Palackeho namesti 4, 128 01 Praha 2
홈페이지	http://www.mzcr.cz

○ 체코 농림부

전화번호	+420-221-811-111
주소	Tesnov 65/17,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eagri.cz

○ 체코 교통부

전화번호	+420-225-131-111
주소	Nabrezi Ludvika Svobody 1222/12, 110 15 Praha 1
홈페이지	http://www.mdcr.cz

○ 체코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420-266-721-300
주소	Na Florenci 2116/15, 110 00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komora.cz

○ 체코 투자청

전화번호	+420-296-342-500
주소	Stepanska 15, 120 00 Praha 2
홈페이지	https://www.czechinvest.org

○ 체코 통계청

전화번호	+420-274-051-111
주소	Na padesatem 3268/81, 100 82 Praha 10
홈페이지	https://www.czso.cz

○ 체코 관세청

전화번호	+420-261-331-111
주소	Budejovicka 7, 140 00 Praha 4
홈페이지	https://www.celnisprava.cz

○ 체코 국세청

전화번호	+420-296-852-222
------	------------------

주소	Lazarska 15/7, 117 22 Praha 1
홈페이지	https://www.financnisprava.cz

<자료원 : 체코정부, 각 정부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22.70 CZK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메뉴)	1메뉴	5.7
2	식품	쌀(Round Grain)	1kg	1.9
3	식품	계란	10개	1.8
4	식품	쇠고기 등심(Hovezi Svickova)	1kg	34.8
5	식품	돼지고기 커틀릿(Veprove Panenka)	1kg	10.6
6	음료	생수 (마트 구입 시)	500ml	0.5
7	음료	병맥주(Pilsner Urquell)	500ml	0.8
8	의료	진통제 (Ibalgin 200mg)	24정	2.2
9	교통	대중교통 기본요금 (프라하 시내버스, 지하철, 트램 통합 티켓)	30분	1.1
10	교통	택시요금 (프라하 도심 기준, AAA택시)	Km	1.8
11	교통	도심 주차료 (프라하 기준)	1시간	1.8
12	서비스	헤어컷 (한인미용실, 여성 짧은 머리 기준)	1회	32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Gasoline)	1L	1.41
14	서비스	경유(Diesel)	1L	1.27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프라하 멀티플렉스 기준)	성인일반 1장	8.8
16	여가	담배 (말보로)	1갑	4.6
17	숙박	중급호텔(3성급, 싱글, Ibis Praha Old Town 기준)	1박	112
18	임금	월최저임금 (2019년 기준)	법정최저	588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연간	2315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75

<자료원 : 체코 중앙은행, 노동부, 맥도날드, 테스코, Dr.Max 등 각 판매처 사이트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체코 코루나(Koruna)로 약칭은 "k" 또는 "CZK"이다. 체코 화폐는 지폐의 경우 100, 200, 500, 1,000, 2,000, 5,000체코 코루나(Korun)의 6종이 있으며, 동전의 경우 1, 2, 5, 10, 20, 50코루나의 6종이 있다.

체코는 EU가입국이나 아직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국민여론 모두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관광지에서는 유로화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환율이 은행고시 환율(또는 환전소 환율)보다는 불리한 환율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로화를 사용할 경우 코루나로 거스름돈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럴 경우에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용환율을 잘 계산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체코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유로화를 체코 코루나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임의로 팁을 포함시키거나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요청해 금액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전방법

주말이나 은행 개점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호텔이나 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되, 환전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몇 군데를 둘러보고 환전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일부 환전소는 환율을 유리하게 고시해 두고 대신 고율의 수수료(4~5%)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체코 코루나화는 100% 태환성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없으며, 시내 길거리에서 환전을 권유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근래에 새로이 등장한 사기 수법으로, 한 사람이 접근해서 환전을 하라고 권유하면 환전 여부에 관계없이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불법 환전을 했다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물론 환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기꾼이므로 절대로 여권이나 지갑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계속 보여달라고 우기면 지나가는 경찰차 혹은 정복 경찰을 불러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이용

예전에 비해 신용카드 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프라하를 포함한 대도시의 대형 쇼핑몰, 중심지 식당, 호텔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아직 소규모 식료품점(Mini Market), 길거리 가판점, 일부 식당, 선물가게 등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곳이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체코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Visa 및 Master 카드 등의 카드가 사용 가능하며, 방식은 비접촉식(Contactless) 카드사용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비접촉식 카드의 경우 500 체코 코루나 이상 결제 시 PIN을 입력하는 방식(서명 불요)이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접촉식 카드의 경우 결제 시 영수증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명 후 카드에 있는 서명과 대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카드에 미리 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1) 교통상황

체코 도심 대중교통은 트램, 버스, 지하철(프라하만 존재)가 운행되며, 소도시 및 외곽지역의 경우 대부분 버스가 운행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운행시간표의 시간에 거의 맞춰 운행되고 각 정류장마다 운행시간표가 표시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프라하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돼 편리하며,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프라하 도심의 경우 출근시간(오전 8시~9시)과 퇴근시간(오후 4시~6시)에 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프라하 곳곳에 도로공사 및 트램공사를 진행해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2) 대중교통

프라하를 포함한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으며, 외곽지나 소도시의 경우 버스가 운행되나 간격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용이 더 활발한 편이다.

프라하의 경우 승차권은 지하철, 버스, 트램 등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을 한 번에 커버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편리하다. 1회용 티켓의 경우 단순히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탑승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개찰기를 통해 승차시점을 기록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찰기는 트램과 버스의 경우 차량 내부에, 지하철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는 장소는 각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자동판매기, 신문판매소(Tabak), 인포메이션 센터 등이다. 모든 지하철역 안에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으며, 일부 트램 및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돼 있다. 일부 트램 정류장에서 승차권 자동판매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바일 SMS로도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체코 유심칩이 있는 경우 전화번호 90206로 승차권 종류별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해 전송하면 SMS 승차권을 전송받을 수 있음.) 모든 승차권은 환승이 가능하나, 금액별 정해진 시간 내로만 이용 가능하다. 프라하 지역의 성인기준 1회용 승차권의 요금은 아래와 같다.

- 30분 : 24 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24)
- 90분: 32 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32)
- 1일권 (24시간): 110 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110)
- 3일권 (72시간): 310 코루나 (90206으로 SMS 전송 메시지: DPT310)

정기권의 경우 리따츠키(Ltaka)라는 사진이 들어간 카드를 사용한다. 프라하 거주자 및 방문자만 사용 가능한 리따츠키(Ltaka)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개인용 카드와 사진과 생년월일이 들어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익명용 카드로 나뉜다. 기존의 오픈 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사용하고, 프라하 시립 도서관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행 일로부터 4년이다. 리따츠키의 경우 요금은 아래와 같다.

- 1개월: 550 코루나
- 3개월: 1,480 코루나
- 5개월: 2,450 코루나
- 1년: 3,650 코루나

대중교통 이용 중 검표원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한 승차권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유효한 승차권이 없는 경우 1인당 800체코 코루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중점 단속 대상으로 반드시 표를 구입한 후 승차하고, 승차권을 구입했으나 개찰이 돼 있지 않은 경우도 무임승차로 간주되므로 항상 개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 징수 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 발급한다.

버스

프라하 시내 중심가는 대부분 메트로(지하철)와 트램이 운행되며, 전철 구간과 연계되는 버스는 주로 트램이 운영되지 않는 외곽지역을 운행한다. 프라하 시내에는 메트로와 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돼 관광객이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단,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시에는 메트로나 트램이 없기 때문에 도심이나 가장 가까운 메트로 역으로 가는 버스(100번, 191번, 510번)나 공항직행 버스(AE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버스운행 시간은 노선마다 다르나 대체로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심야노선버스는 자정부터 05시까지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대부분 1시간 간격)에 운행한다.

버스는 프라하의 모든 대중교통수단(MHD)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며, 버스 탑승 후 승차권을 버스 내부에 있는 개찰기에 넣어 사용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택시

택시는 대부분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 시 호텔 프론트에서 일반 택시를 불러달라고 할 수 있다. 호텔 앞 대기택시는 요금이 다소 비싼 편이다. 시내중심가에 대기 중인 택시는 거의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므로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 목적지를 기사에게 말하고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후 승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택시비는 콜택시에 비해 일반적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콜택시는 AAA(☎222 333 222, 14014), City Taxi(☎257 257 257), Speed Cars(☎224 234 234), Halo Taxi(☎2 4111 4111), Modry Andel(☎737 222 333) 등이 있다. 해당번호를 호출하면 안내원이 나오며 대부분 영어 구사 가능하다. 전화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착지 주소(거리명 및 번지수 혹은 호텔명 등)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공중전화로 이용 가능하다. 최근 AAA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의 위치를 자동 인식해 전화하지 않고도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라하에서 문자를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름과 현재 위치, 목적지를 문자로 (+420) 736 300 299에 보내면, 택시번호와 함께 몇 분 뒤에 도착할 것인지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프라하의 경우,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 우버가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편이다.

지하철,트램

1) 지하철

지하철(메트로)은 프라하에만 존재하며, 프라하 지하철노선은 A선(초록색), B선(노란색), C선(빨간색) 총 3개의 노선이 있다. 환승역으로는 Mstek, Muzeum, Florenc가 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출근시간 기준으로 2~3분, 승객의 이용이 적은 저녁 시간에는 약 10분마다 배차돼 있다. 승차 및 하차 시, 출입문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지하철도 모든 대중교통수단(MHD)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 사용하며, 지하철 승강장을 내려가기 전 에스컬레이터 앞의 개찰기에 승차권을 넣어 사용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2) 트램

프라하의 경우 트램이 잘 발달돼 지하철 역 사이와 주요 중심지를 트램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트램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심야노선 트램은 자정부터 05시까지 20분~3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트램은 프라하의 모든 대중교통수단(MHD)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승차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며, 트램탑승 후 승차권을 트램 내부에 있는 개찰기에 넣어 사용개시(최초 사용 시)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다. 통신

핸드폰

핸드폰의 경우 기존 스마트폰에서 유심칩만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며, 유심칩(Voda폰 기준 30일간 10GB의 경우 800 체코 코루나)의 경우 공항이나 도심의 휴대폰 통신사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휴대폰 통신사로는 O2, T-Mobile, Vodafone이 있다. 또한, 충전식 선불 카드를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고, 후불제인 경우 이동 통신사마다 약정 요금제 계약기간이 다르므로 통신사를 방문해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각 통신사별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O2 : <https://www.o2.cz/osobni/en/mobile-tariffs>
- T-Mobile: www.t-mobile.cz/web/en
- Vodafone: <https://www.vodafone.cz/en/calling/tariffs/>

인터넷(와이파이)

체코 내 인터넷 사용은 일반화 돼 있으며, 와이파이의 경우도 프라하의 경우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자택에 인터넷을 설치할 경우 서비스 업체(O2 또는 UP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내역 확인용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되며, 3일 이내에 인터넷 설치기사가 연락해 신청 주소지에 이용 가능한 인터넷 속도를 알려주며 설치를 도와준다(O2 기준). 인터넷 설치 후 문제 발생 시 각 회사의 영어 상담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나, O2의 경우 영어 상담원 연결이 매우 어렵고, UPC의 경우 업무시간 내에는 영어 상담원이 상시 대기 중이다. 각 인터넷 회사별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O2 : www.o2.cz/osobni/en/internet
- UPC: www.upc.cz/internet

라. 관광명소

○ 프라하성(Prague Castle)

도시명	프라하
주소	119 08, Prague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시즌(4.1-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하성 전체: 6:00~22:00 - 역사 건물: 9:00~17:00 ○ 겨울 시즌(11.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하 성 전체: 6:00~22:00 - 역사 건물: 9:00~16: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명소소개	9세기 후반 현재의 프라하성 자리에 작은 성들이 건축됐으며, 1303년 화재로 작은 성들이 소실됐으나 1333년 카렐 4세(즉위 전)의 지시로 프라하 성이 축성됐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체코 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통령실이 프라하 성에 들어가게 됐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20 224 372 423 ○ 홈페이지: https://www.hrad.cz/

○ 성비투스 대성당(St. Vithus Cathedral)

도시명	프라하
주소	III. nadvori 48/2, 119 01 Praha 1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시즌 (4.1-10.31) : 9:00~17:00 ○ 겨울 시즌 (11.1-3.1) : 9:00~16: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명소소개	10세기경부터 원형 건물이 있었으나, 1344년 카렐 4세 때 성당 건설이 시작됐다. 1873~1929년간 건설된 성당 서쪽 부분(신 고딕 양식)이 완성됨에 따라 현재의 모습(길이 124M, 최대폭 60M, 최고 높이 100M 정도 규모)으로 완공됐다. 성당 지하에는 카렐 4세를 비롯한 수 명의 체코 왕 무덤이 있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 224 372 423 홈페이지: https://www.hrad.cz/

○ 카렐교(Charles bridge)

도시명	프라하
주소	Karluv most, 110 00 Praha 1
운영시간	상시 이용 가능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1342년의 대홍수로 현재의 다리 자리에 있던 목조 다리(935년 건설) 및 석조 다리(JUDITH 다리, 1170년 건설)가 모두 유실된 이후 1357년 카렐 4세의 명령에 의해 당시 27세인 독일 궁정건축가인 피터팔러(프라하성과 비투스 성당도 건축)에 의해 착공돼 1402년에 완성됐으며, 체코에서 피섹의 돌다리 다음으로 오래된 다리이다. 피터 팔러는 구시가지와 프라하 성을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방어적 역할 수행도 고려해 다리를 건설했다. 이곳은 30년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이다. 이 다리는 체코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렐4세의 이름을 따라, 1870년 카렐교로 명명됐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수리됐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 221 714 714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

○ 천문시계(Astronomical Clock)

도시명	프라하
주소	Staromestske nam. 1, 110 00 Stare Mesto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요일-일요일 9:00~22:00 월요일 11: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천문 시계의 바깥 원은 청색, 흑색, 그 사이사이에 갈색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각 낮과 밤, 새벽, 저녁을 나타내며 천문 시계 안쪽 원은 태양, 달, 북극을 상징한다. 천문 시계 밑의 원형은 12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매일을 상징하는 성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매시 정각 시계 옆 해골 인형이 움직이면서 종을 치면, 동시에 그 위 두 개의 창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12제자 반신 목각인형이 돌아가면서 나타난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420 236 002 629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

○ 바츨라프 광장(Wenceslas Square)

도시명	프라하
주소	110 00 Prague

운영시간	상시 이용 가능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광장(廣場)의 동쪽 끝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에서 출발해 나 프리코페거리(서울의 명동과 같은 번화가)까지의 길이 750m, 폭 60m로광장이라기보다는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대로에 가깝다. 이 광장은20세기 초까지 마시장으로 사용됐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몰락으로 바츨라프 가마상 밑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공화국 출범이 선포됐고, 1948년에는 공산당의 권력 장악으로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됐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무차별 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을 때 체코 국민들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저항했으며, 1989년 민주화 혁명(벨벳 혁명)의 중심지가 되는 등 체코 근대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20 221 714 714 ○ 홈페이지: https://www.prague.eu/en

<자료원 : 프라하성 및 프라하시 웹사이트>

마. 식당

- 현지식당

○ 스타라 쿠젤나(Stara Kuzelna)

도시명	오스트라바
전화번호	+420-733-390-701
주소	Na Baranovci 347, 710 00, Ostrava-Slezska Ostrava
가격	체코 전통음식 1인 기준 9달러 정도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11:00~22:00 ○ 토 12:00~22:00 ○ 일 12:00~20: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체코 퓨전 식당으로 다양한 메뉴가 있음.

○ 우 베이보두(U Vejvodu)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219-999
주소	Jilska 4, 110 00 Praha 1
가격	체코 전통음식 1인 기준 9달러 정도
영업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목 10:00~03:00 ○ 금~토 10:00~04:00 ○ 일: 10:00~02: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프라하 시내에 위치한 체코 전통 식당

○ 골코브나 첼니체(Restaurant Kolkovna (Celnice))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212-240
주소	V Celnici 1031/4, 110 00 Nove Mesto
가격	가장 유명한 wings 기준 8.5달러
영업시간	매일 11:00~24: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wing과 고젤 맥주의 조합이 유명한 체코 퓨전 식당으로 다양한 메뉴가 있음.

○ 부드바르카 비어하우스(Budvarka Beerhouse Restaurant)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960-820
주소	Wuchterlova 336/22, Praha 6
가격	1인 기준 9달러 정도
영업시간	○ 월-토: 11:00~24:00 ○ 일: 11:0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체코 유명 맥주인 부드바르 맥주 전문점으로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음.

○ 우 플레꾸(U Fleku)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934-019
주소	Kremencova 165/11, 110 00 Praha 1
가격	1인 기준 10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0:0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500년 된 체코 전통식당으로 흑맥주가 유명함.

<자료원 : 각 식당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한국식당

○ 한일(Hanil)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715-867
주소	Slavikova 1581/24, Praha 3-Zizkov
가격	1인 기준 18달러 정도
영업시간	월-토: 11:30~23:00(브레이크 타임: 14:30~17:3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프라하에서 운영한 지 오래된 한식 및 일식 식당으로 한식보다는 일식 위주, 스시 메뉴가 다양함. 고급식당으로 가격대는 높은 편임

○ 비빔밥 코리아(Bibimbap Korea)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737-917-956
주소	Chlumova 612/1, Praha 3
가격	1인당 9달러 정도
영업시간	○ 월-금: 11:00~22:00 ○ 토: 12:00~22: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비빔밥, 김밥, 도시락 위주의 한식 메뉴

○ 마미(Mamy)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4-815-009
주소	1호점: Benediktska 1060/3, Praha 1/ 2호점: Sokolska 52, 120 00 Nove Mesto
가격	1인당 8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30~22:00(브레이크 타임 16:00~17:3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1호점, 2호점이 있으며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대가 저렴한 편임.

○ 토코(Tomo Restaurant)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222-233-695
주소	Manesova 35, 120 00 Praha 2

가격	1인당 10달러 정도
영업시간	월-토 : 10:00~23:00(브레이크 타임 15:00~17: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와 스시 위주의 일식 메뉴가 있음.

○ 유니쿠(Yuniku Charocoal BBQ)

도시명	프라하
전화번호	+420-777-667-083
주소	Slezska 3, Praha 2
가격	1인당 11달러 정도
영업시간	매일 11:30~23:00
휴무일	휴무 시 별도 공지
소개	소고기, 돼지고기 등 구이 위주의 메뉴

<자료원 :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디플로맷 호텔(Vienna House Diplomat Prauge)

도시명	프라하
주소	Evropska 370/15, 160 41 Praha 6
전화번호	+420-296-559-111
숙박료	98~170달러 (스탠다드룸)
소개	대사관이 모여 있는 프라하 6지구의 데이비츠키(Dejvicka)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시내 및 공항 연결이 용이함.

○ 코린시아 호텔(Corinthia Tower Hotel)

도시명	프라하
주소	Kongresova 1655/1, 140 69 Praha 4-Nusle
전화번호	+420-261-191-111
홈페이지	http://www.corinthia.com/Hotel/Prague
숙박료	107~120달러 (수페리어 쿤룸)

소개	프라하 전경을 볼 수 있는 비셰흐라드 근방의 언덕에 위치해 도시 전망을 볼 수 있으며, 지하철 비셰흐라드 역 바로 옆에 위치해 시내 연결도 용이
----	--

○ 인터콘티넨탈 호텔(Intercontinental Prague)

도시명	프라하
주소	Parizska 30, 110 00 Stare Mesto
전화번호	+420-296-631-118
홈페이지	http://www.corinthia.com
숙박료	130~150달러 (트윈룸)
소개	프라하 구시가지 Parizska 쇼핑 거리에 위치해 카렐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

<자료원 : 호텔 웹사이트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게스트하우스

○ 행복한 프라하(Happy Praha)

도시명	프라하
주소	Zitna 610/23, 110 00 Praha 1
전화번호	+420-776-625-332
홈페이지	http://www.happypraha.com/
숙박료	35달러(성수기 도미토리 기준)
소개	조식 및 간단한 석식 제공. 간단한 취사 가능

○ 와우 프라하(Wow Praha)

도시명	프라하
주소	Mezibranska7, PRAHA1 110-00
전화번호	+420-776-565-931
홈페이지	http://www.wow-praha.com/
숙박료	35달러(성수기 도미토리 기준)
소개	프라하 중앙역 5분 거리. 조식 제공

○ 엄지민박(Umji Praha)

도시명	프라하
주소	Londonska 424/77, Praha 2

전화번호	+420-773-205-252
홈페이지	http://umjipraha.com/
숙박료	35달러(성수기 도미토리 기준)
소개	공항, 중앙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위치. 조식 제공

〈자료원 : 각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사. 치안

치안상황

체코는 타 유럽에 비해 비교적 난민 유입이 많지 않고 서유럽 대비 테러 위협이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치안도 양호한 편으로 발령된 여행경보는 없다. 그러나 프라하와 같이 관광객이 많은 관광도시에서는 소매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까를교, 구시가지 광장 등 주요 관광지와 관광객이 붐비는 식당, 백화점, 지하철, 기차역 및 기차 내 등에서 귀중품을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차 내에서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올려두는 가방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의자 위나 아래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귀중품은 호텔의 금고(Safety Box)에 보관하고 그날 쓸 만큼의 돈만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야간에 시내 주요 관광지 이외의 외곽지역 출입 시에도 주의를 요하므로, 가급적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의 방문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또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거나 수상한 사람이 접근할 경우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차량 운전 시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와 같은 대도시 시내에는 트램이 운행되고 트램길과 혼용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전 시 신분증, 유효한 면허증, 차량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양 당사자간 물적 피해가액이 10만 코루나 이상이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 후 가급적 사고차량 이동 없이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나, 고속도로나 혼잡한 도로의 경우 안전 삼각대를 후방에 두고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다. 양 당사자간 물적 피해가액이 10만 코루나 이하인 경우는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를 마련해 보험사에 신고가 가능하다. 단, 사고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영사조력이 필요할 경우 주체코대사관(근무시간 중 +420-234-090-411, 근무시간 외 +420-725-352-420) 또는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연락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든 후 재외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한국 귀국 시 효력이 상실되는 임시여권)을 발급받는다. 여권발급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분실신고서, 여권사진 2매, 한국행 e-ticket, 수수료 15달러 또는 이에 상당한 체코화가 필요하다. 주체코대사관 연락처 및 주체코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지 경찰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전화번호: +420-234-090-411 / 근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420-725-352-420

- 주소: slavickova 5, Praha 6

- 이메일: czech@mofa.go.kr

- 찾아가는 길: 지하철 A선 Hradcanska역 하차 후 아래 약도에 해당하는 출구로 나와 철길을 따라 약 200m 도보. 기차 대기 신호등을 건너 뒤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약 200m 걸으면 오른쪽에 흰색 건물 앞 한국 대사관 태극기가 보임.

○ 분실신고 경찰서

- 전화번호: +420-974-851-750

- 주소: Jungmannovo namesti 771/9, Praha 1

- 이메일: p1mopmus@mvcz.cz

- 찾아가는 길: 지하철 A선 Mustek역 하차 후 쇼핑센터 NEWYORKER를 찾음. NEWYORKER를 등지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 골목길에 외국인경찰서 위치

- 참고사항: 신분증(여권 등)의 경우 분실 및 도난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타 소지품(핸드폰, 카메라 등)의 경우 분실이 아닌 도난신고만 가능함.

○ 여권사진 촬영장소

- 경찰서 인근 Mustek 지하철 역내 즉석 사진기 이용

- 대사관 인근 Hradcanska 역 근처 사진스튜디오 이용, 소요시간 20분

3) 응급 전화번호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화재신고: 150

- 범죄신고: 경찰 158, 시경찰: 156

- 응급환자: 155

자료원: 주체코대사관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집 구하기

체코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장기 비자 취득, 외국인 거주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자동차 운행 등록 등이 불가능하고 이삿짐을 인수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여름이 서늘한 기후 영향으로 냉방 장치는 없으나 기타 난방, 가스, 전기, 수도, 전화 등 설비는 완비돼 있다. 가구가 비치돼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가구가 비치돼 있지 않아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부엌용 가구는 기본적으로 비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 사용료 등은 매월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연간 단위로 재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화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데, 한 달 후에 청구서가 나오는 관계로 이사 후의 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ealestate.expats.cz, www.sreality.cz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적당한 집을 물색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 보증금으로 월 임대료의 1~2개월 치를 예치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하는 경우 통상 소개 수수료로 1~2개월치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때에 따라 임차료 100%+ 부가가치세 21%를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나, 모두 합법적이다. 계약 시 보증금 지불은 계약 파기 시 규정을 잘 확인한 후 서명한 후에 주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일상적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약완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주인이 사용으로 인한 파손 또는 고장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파손으로 인한 금액을 감한 다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종 외국인인 경우를 이를 악용해 집주인이 작은 흠집이나 오염을 트집잡거나 파손에 대해 과대하게 수리비용을 측정해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 계약 시 집안 곳곳에 사진을 찍어 놓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이메일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수리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는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문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는 체코어와 영어로 각각 준비한 후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인해야 한다. 체코의 집주인들은 외국인들이 현지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계약서에 사인하기에 앞서 현지 법률인을 통해 계약서 수정 서비스 및 집주인과의 의견 조율을 함께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현지인들은 전문가가 개입되는 경우 순조롭게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계약서상의 임대자명이 소유주가 아닌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주택 가격 현황

프라하 등 체코의 도시에는 외국인 거주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부터 교외 넓은 빌라에 이르기까지 주거지의 종류가 다양하다. 많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1개월에서 2개월 임대 이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용 건물의 판매와 임대 가격은 도시, 지역, 크기,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지방당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허가 지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최근 체코 내 주택시세는 상승하는 추세이다. 부동산업체 Reality Mix에 따르면 2018년 11월 평균 매매가격은 60㎡ 기준으로 프라하는 약 514만 코루나(약 2억 5400만원), 브르노의 경우 약 364만 코루나(약 1억 8000만원), 오스트라바의 경우 약 130만 코루나(약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로 부동산업체 Reality Mix에 따르면 2018년 11월 월평균 임대가격은 60㎡ 기준으로 프라하는 20,942코루나(약 103만 원), 브르노의 경우 14,351코루나(약 71만 원) 오스트라바의 경우 11,402코루나(약 5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하의 경우 10구역으로 나뉘어져있는데 가장 중심지인 프라하 1지구와 프라하 2지구가 각각 60㎡ 기준 월평균 임대가격이 27,827코루나, 24,500코루나로 임대가격이 가장 높고 프라하 4,9,10지구가 16만 코루나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화

최근에는 체코에도 휴대폰의 보급의 일반화로 가정의 경우 일반전화 사용은 흔하지 않은 편이다.

임대 주택의 경우, 이미 전화가 설치돼 있는 경우 명의 변경은 집 주인이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규 유선전화 신청 시에는 유선전화 공급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연락 후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계약진행이 완료되면(서명 후) 공급회사에서 설치하는 직원에 방문해 설치를 진행한다. 계약에서 설치까지 공급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서비스 취소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 취소 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유선전화 신청은 UPC와 O2를 통해 가능하며 UPC의 경우, 전화요금은 매달 최소 95코루나부터이며 서비스 지역 및 요금별 상세내역을 UP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pc.cz/content/www30-upc-cz/en/phones/offer/compare/>)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11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나, 현지 변압기 구입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특히,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해 고정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지만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는다.

식수

체코에서 수도물은 위생적으로 식수로 음용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대다수의 체코사람들이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체코의 대부분 지역의 수도는 석회기가 있으므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필터가 있는 소형 정수기(브리타 정수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체코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형 정수기는 가정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탄산수도 많이 음용하는 편이다. 생수는 탄산수(Perlivá voda)와 탄산이 없는 생수(Neperlivá voda) 모두 마트 및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체코에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딜러를 통해 시판되고 있으며, 다른 외제차도 각 대리점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코에서는 한국과 달리 수동기어 자동차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동기어 자동차의 경우 수동기어에 비해 고가이며, 주문 후 자동차를 전달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구입 계약 시 신중하게 계약서를 읽고 판매자 이름이 등록 서류에 표시된 이름과 동일하거나 판매자가 등록된 소유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부가가치세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 계약 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판매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 등록 증명서(The registration Certificate, Osvedčení o registraci vozidla (Technický průkaz))

차량가격

체코의 경우 한국과 달리 세단보다는 중 소형 해치백 모델이 대중적이며, 스코다,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의 중형 차량이 대중적으로 체코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체코에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가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최소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은 판매처별, 옵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스코다 Octavia : 437,900코루나부터
- 스코다 Fabia : 243,900코루나부터
- 폭스바겐 Golf : 426,900코루나부터
- 현대 i30 fastback : 379,900코루나부터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체코 비자 보유자, 장기 비자(1년 이상) 보유자, 영구 거주 허가증 보유자는 거주 허가증에 기재된 지역 내의 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에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코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통상 20일이 소요되나, 급행료 500체코 코루나를 납부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 한-체코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
 - 2006.7.1. 발효된 체코 도로교통법(05.10.개정)에 의거, 외국인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 체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 비 EU 국가 국적자로서 90일 이상 체류 사증 보유자
 - 장기거주(1년 이상) 허가증 보유자
 - 영구거주 허가증 보유자
-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체코 내 206여 개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존재하며, 이전에는 신청자가 자신의 거주허가증에 기재된 지역 내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8년 7월부터 거주지역 이외의 기관에서도 체코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
 - 프라하 지역: Business Centre Vysehrad, Na Pankraci 1685/17, 140 00 Praha 4 (전화: +420-236-005-490)
 - 오스트라바 지역: Ulice 30. dubna 635/35, Ostrava-Moravska Ostrava, 702 00 (전화: +420-844-121-314)
 - 프리덱 미스텍 지역: Palackeho 115, 738 22 Frydek-Mistek (전화: +420-558-609-166)
- 교환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신청서(체코어 서식)
 - 한국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운전면허증 체코어 번역본
 - 한국운전면허증의 체코어 번역문은 주체코 대사관에서 발급
 - 운전자 건강진단서 1부
 - 여권
 - 90일 이상 체류 비자 또는 장기거주 허가증 또는 영구거주 허가증
 - 컬러 사진(35mmX45mm) 1매
 - 수수료: 200kc
- 교환발급 과정: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 확인 후, 발급기관은 한국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신청자에게 되돌려주며, 신청서 수령증을 발급한다. 수령증에 체코운전면허증 발급일이 표시된다. 교환·발급까지는 통상 20일이 소요되나, 급행료 200코루나를 지불할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체코운전면허증 수령 시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운전면허증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운전면허증을 반환 받기로 결정할 경우, 동 운전면허증은 체코 교통부를 거쳐 대사관에 전달되며,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수령한다. 운전면허증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발급기관에서 보관하게 된다.
- 한-체코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체제
 - (한국) 1종 대형 : (체코) B,C,D
 - (한국) 1종 보통 : (체코) B, C1, D1

- (한국) 1종 기타 : (체코) B, B+E, C, C+E

- (한국) 2종 : B

○ 체코 운전면허증 종류 설명

- AM: 50ccm까지의 오토바이, 15세 이상

- A1: 125ccm까지의 오토바이, 16세 이상

- A2: 25kW ~ 35KW까지의 오토바이, 18세 이상

- A: 35kW이상의 오토바이, 24세 이상

- B: 3~3.5톤 승용차(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C: 3.5톤 이상 로리(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D: 8석 이상의 버스

- C1: 3.5~7.5톤의 로리

- D1: 8~16석의 소형버스

- B+E: 3~3.5톤 승용차(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 C+E: 3.5톤 이상 로리(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상업은행(Komerční banka): 소매, 기업 및 투자 등 보편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 체코 내에 399개의 지점과 160만 이상의 고객 보유

○ 체코저축은행(Ceska sporitelna): 오스트리아 Erste 그룹의 일부로, 최다 고객(47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은행

○ 체코슬로바키아 상업은행(CSOB): Komerční Banka와 마찬가지로 체코에서 가장 큰 상업 은행 중 하나. 280개의 은행 지점과 3,300 개의 Postovní sporitelna 라는 우체국 저축은행을 운영

계좌 개설방법

은행계좌는 주소지만 체코에 있으면 장·단기 체류자 모두 가능하며, 유로화나 달러 계좌와 체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체코는 외화 거래가 자유화돼 있어 외화 표시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우며, 송금 등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 단, 은행거래 유지 및 해외 송금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은행마다 차이가 크므로, 꼼꼼히 알아본 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은행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확인은 필수다. 체코는 은행계좌 개설 시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주지 않으며, 한국식 통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 2주가량 경과한 후 안내문과 함께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직접 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 계좌개설 구비서류(상업은행 기준)

- 신분증(여권, 국제운전 면허증, 기타 신분증) 2개

- 비자 및 여권에 찍힌 거주지 신고 스탬프

- 체류목적 증명서(노동허가서, 입학허가서 등)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유일 미국국제학교로 외국인에게 선호도가 높아 입학이 어려운 상황 ○ 1948년 설립되어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과 the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회원으로 등록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학금: 1,100달러 ○ 만 3세~4세: 연간 11,400달러 ○ 연간 12,900달러 ○ 만 4세~5세: 연간 12,700달러 ○ 연간 14,200달러 ○ 유치원(만 5세 이상)~5학년: 연간 18,600달러
홈페이지	https://www.isp.cz/
비고	미국계 학교

○ The Prague British School(PBS)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ECIS) 및 the Council of British Independent Schools in the European Communities (COBISec)의 회원으로 등록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orns Day Care(만 20개월~3세) : 연간 약 7,000~13,500달러 ○ day Care Nursery(만 3세~4세) : 연간 약 8,000~13,500달러 ○ Reception(만 4~5세) : 연간 약 16,750달러 ○ Year 1~2 : 연간 약 16,750달러 ○ Year 3~6 : 연간 약 17,250달러 ○ Year 7~9 : 연간 약 18,750달러 ○ Year 10~12 : 연간 약 19,000달러
홈페이지	http://www.pbschool.cz/
비고	영국계 학교

○ Riverside School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식 미션 스쿨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세~4세 : 연간 약 9,100달러 ○ 만 4세~7세 : 연간 약 12,300달러 ○ 만 7세~11세 : 연간 약 14,500달러 ○ 만 11세~18세 : 연간 약 14,700달러 ○ 입학금 약 400달러 별도, ESL 별도(약 1,540달러)

홈페이지	http://www.riversideschool.cz
비고	영국계 학교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현지학교

o Lodynska Zakladni Skola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초등학교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뉘어진다. 저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말하며 고학년은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의미한다. 저학년 때는 체코어, 자연, 산수, 외국어, 미술, 음악, 체육 등이 주 과목이다. 고학년의 주 과목들은 체코어와 문학, 역사, 사회, 도덕, 지리, 산수, 자연, 물리, 화학,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몇몇 선택과목이 있다. (예: 학교 합창단, 컴퓨터 등등) 체코 초등학교에는 고학년부터 과목마다 선생님이 따로 있다.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www.londynska.cz/

o Gymnazium Duhovka

도시명	프라하
커리큘럼	체코의 졸업 시험 Maturita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체결한 8개 국어 8개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비	학교에 문의 가능
홈페이지	https://www.duhovkagymnazium.cz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마. 병원

o University hospital Brno

도시명	브르노
주소	Jihlavská 20, Brno
전화번호	+420-532-23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o University hospital Ostrava

도시명	오스트라바
-----	-------

주소	17. listopadu 1790, Ostrava-Poruba
전화번호	+420-597-37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 Na Homolce Hospital

도시명	프라하
주소	Roentgenova 2, Praha 5
전화번호	+420-257-27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영어 소통 가능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메트로폴 즐리친(Metropole Zlicin)

도시명	프라하
주소	Revnicka 1, 155 21 Praha-Zlicin
홈페이지	http://www.metropole.cz
비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종합 쇼핑몰. 가구 백화점 이케아도 이 곳에 위치하고 있음

○ 센트룸 호도브 (Centrum Chodov)

도시명	프라하
주소	Roztylska 2321/19, 148 00 Praha 11
홈페이지	https://www.centrumchodov.cz/
비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종합 쇼핑몰. 영화관과 큰 푸드 코트가 있음

○ 팔라디움 (Palladium)

도시명	프라하
주소	nam. Republiky 1078/1, 110 00 Nove Mesto

홈페이지	http://www.palladiumpraha.cz
비고	프라하 시내 중심에 위치한 종합 쇼핑몰. 편리한 교통과 위치로 항상 이용객이 많음

〈자료원 : 각 쇼핑몰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식품점

○ 테스코 에덴 (Tesco Extra Eden)

도시명	프라하
주소	U Slavie 1527/3, 100 00 Praha 10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에덴 쇼핑몰에 위치한 대형 테스코 매장

○ 알버트 안델 (Albert Zlaty Andel)

도시명	프라하
주소	Plzenska 344/1, 150 00 Praha 5-Andel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지하철 B선 안델(Andel)역 근방의 대형 알버트 매장

○ 사파 (Safa)

도시명	프라하
주소	Vysehradska 1349/2
취급 식료품	아시아 푸드 및 각종 식료품
비고	체코의 베트남 타운으로 주로 베트남 식품을 판매한다. 한국 식료품도 구매할 수 있다.

〈자료원 :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Albatross Golf Resort

도시명	비소키 우에즈드(Vysoky Ujezd)
주소	Sokolska 162, 267 16, Vysoky Ujezd
홈페이지	https://albatross.cz/en/
소개	국제 공항 부근 프라하 외곽에 위치한 골프 리조트. 18홀 골프 코스를 갖추고 있음

○ 폼 팩토리(Form Factory)

도시명	프라하
-----	-----

주소	OC PALLADIUM Namesti Republiky 1079/1a 110 00 Praha 1 (nakupni centrum Palladium - 2, patro)
홈페이지	https://exclusive.formfactory.cz/
소개	체코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센터

○ 뵘돌리 수영장(Podoli Swimming Pool)

도시명	프라하
주소	Podolska 74, Praha 4
홈페이지	https://pspodoli.cz/
소개	비셰흐라드 부근 블타바 강가에 위치.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이 있는 스포츠 및 레저 센터

<자료원 : 각 편의시설 홈페이지 및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New Year's day)	2019-01-01	
성 금요일(Good Friday)	2019-04-19	
부활절(Easter Monday)	2019-04-22	
노동절(Labor day)	2019-05-01	
2차 대전 종전 기념일(Liberation Day)	2019-05-08	
기독교 선교 기념일(Cyril &Methodius Day)	2019-07-05	
얀 후스 순교 기념일(Jan Huss Day)	2019-07-06	
체코 건국 기념일(Czech National Day)	2019-09-28	
독립 기념일(Independent Day)	2019-10-28	
자유화 운동(Velvet 혁명) 기념일	2019-11-17	
크리스마스 연휴	2019-12-24	
크리스마스 연휴	2019-12-25	
크리스마스 연휴	2019-12-26	

<자료원 : 프라하 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프라하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Skretova 12, 120 00, Praha 2, Czech Republic
- 전화번호: +420-245-005-650
- 이메일: kotra@kotra.cz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prague>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에서 택시 이용 시(AAA Taxi, City Taxi, 우버 등)
 - 비용은 약 600코루나(약 24유로)내외(우버의 경우 300~400코루나), 소요시간은 약 30분 내외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 공항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종점인 지하철역 Nadrazi Veleslavin(A선)에서 하차 후 지하철로 갈아타고 Muzeum(A선)역에서 하차
 - 무역관은 A선(녹색)과 C선(적색)의 환승역인 Muzeum역으로 부터 100m정도 거리에 위치 (국립자연사 박물관 뒤 도로 건너편 Panarama Business Center 건물 내 위치)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